

## 한국의 장애개념체계: 문헌비평적 기반연구

한 현 민\*

대진대학교 아동학과

---

---

### 《 요약 》

---

---

이 연구는 지금 한국에서 한글로 쓰는 장애란 말의 의미와 그 말의 시원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전통시대에 쓰였던 잔질, 폐질, 독질이란 말의 출전과 그 의미를 따져 살폈다. 그와 함께, 근대, 제국주의 일본의 강점기와 미군정기에 쓰던 불구폐질, 장애, 장해란 말을 주로 당시의 법률문서를 통해 찾아내고 그 시작과 경과를 살폈다. 이 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지금까지 쓰고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장애분류에 있는 말로 disorder,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 등을 자의(字意)와 함께 관련 학술서에서 찾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지금의 관점에서 풀어보았다. 전통시대의 장애인의 사회적 존재양식을 현대와 비교하여 논의도 했다. 장애(장해)란 용어가 외래문화 수입의 결과이고, 그로 인해 장애인의 존재양식과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모두 관련문헌을 비평적 관점에서 따져 살피는 방법을 사용했다. 대안적인 용어의 모색과 장애인 통합의 문제에 대한 치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후속연구의 방향도 제시했다.

---

---

주제어 : 잔질(殘疾), 폐질(廢疾), 독질(篤疾/毒疾), 장애(障礙/障碍), 장해(障害), 손상(損傷), 불능(不能), 무능(無能), 불리(不利)

---

\* 주저자 (hhmn@daejin.ac.kr)

## 1. 문제의 제기

내가 졸저 『특수아동과 특수교육』(한현민, 2000)을 낸 후 특수교육학의 바탕공부를 위해 새롭게 시작한 공부의 첫 성과를 「장애와 특수교육요구: 개념적 고찰」(한현민, 2001)로 발표한 뒤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장애’란 무엇이고, 그 말을 우리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가?”란 물음이다. 기실, 앞의 글은 1993년부터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마주하며 그들에게 특수교육을(또는 에 관해) 가르치는 자로서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문제였고, 학업성취 정도와 학점 부여를 위한 시험에서 그들에게 내민 질문에 대한 내 나름의 답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국가 최고지도자 유고 후 대통령 조기선거를 앞둔 요즈음, 협치니, 대연정이니, 공동정권이니, 국가 대개조니, 대청소니, 대통합이니, 참으로 많은 말들이 오고간다. 다 나라 잘 되게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니 좋은 말들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많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역사적 과업임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 모든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되었다는 말들이 그렇고, 헌법만 고치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란 말도 그렇다. 나는 이 문제에 사회 각계의 지도층 위치에 있는 모든 ‘기성세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성세대부터 국가를 개조하고, 대청소하고,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 국가적으로 개조하고, 청소하고, 통합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청산·청소·개조할 것인가.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적장애학회 2007년 학술대회에서 내가 주제 발표한 내용의 글에 청중의 한 명이 질문을 했다. 「특수교육진흥법」의 제명(題名)에 있는 “진흥(振興)”이 ‘떨쳐 일어남’이란 자의를 넘어 제국주의 일본이 대동아전쟁에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해, 조선인의 징용을 위해 쓴 말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진흥”의 삭제와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그의 대한 내 생각이 궁금하다고 했다. 지금 사실대로 실토하면, 당시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 못했다. 그 물음에 직답하는 대신 내가 쓰던 인장(印章)을 보여주었다. 과거 관인(官印)만이 아니라 사인(私印)까지 ‘네모 난’ 인장을 썼다고 했다. 지금 사용하는 ‘둥근’ 인장은 ‘일본 국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걸 바꾸는 것도 일제 잔재 청산의 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했던 것이다.

그 날로부터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한 가지 버릇이 생겼다.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습관처럼 신문을 볼 때 꼭 보는 면이 있다. ‘인사(人事)’ 면이다. 신문에서 ○○법

(예: 인성교육‘진흥’법), ○○‘진흥’협회 또는 ○○‘진흥’원(예: 한국‘보육’진흥원) 따위를 거의 매일 본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물어봤다. 신통한 답을 듣지 못했다. ‘진흥’이 일제 잔재라는 주장의 근거도, 그 반대가 ‘사실’에 더 가깝다는 반론의 근거도 아직 찾지 못했다. ‘결정적’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식민지 조선의 승려에게조차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제국주의 일본인을 큰 호통으로 꾸짖었던 어느 스님 이야기에서 작은 단서를 찾았을 뿐이다. 더 찾고 밝혀 글로 발표할 것이다.

이 글 역시 이러한 역사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장애’, 그것은 언제부터 이 땅에서 사용되었는가. 특수교육(학)의 역사에 대한 개인 저술 또는 각종 기관·학회·협회 ○○년사는 대개 서양의 역사를 크게 다루고 정작 한국특수교육(학) 또는 장애 인사는 소략적으로 언급하고 글을 맺는다. 일제 식민지 시대와 미군정 시대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도 있다. 40여년의 역사가 이 땅에서 몽땅 사라졌다. 나는 잔재의 청산과 함께 역사의 복원도 중요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장애’란 호칭도 일제의 잔재일 수 있다는 심증을 갖고 있다. ‘치료교육학’의 경우처럼 일본을 통한 양학(洋學)의 수입, 그 찌꺼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다면, 대청소 때 걸레로 닦아내야 할 먼지일 것이다. 버려야 할 쓰레기 더미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자 가설(假設)이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1학기까지 살았던 동네에 자기주장이 유독 강한 친구가 있었다. 나를 포함한 다른 아이들에게 자기주장을 강요하는 일이 많았고 가끔은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그 아이는 ‘악바리’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나도 그곳에 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불렸다. 5학년 2학기부터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살았던 동네에는 좀 ‘이상’하게 생기고 조금 생각이 모자란 듯 보인 아이가 살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내가 다니던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그 대신 ‘어디’를 다닌다는 소문만 있을 뿐 그곳이 어딘지,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뒷날 대구대학교에 진학하여 특수교육을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야 그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지닌 ‘정신박약’아였고, 그가 다닌 곳이 ‘특수’학교란 걸 알게 되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도 있다. 말은 정신세계를 지배한다.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이 씨가 되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내가 한 말은 내가 내게 명령하는 지시[self-instruction]다. 내가 한 말이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된다. 행동이 습관이 되어 어떤 것을 대하는 ‘태도’를 이룬다. 내가 그 아이를 일러 “다운증후군” 또는 “정신박약”이라고 말했다면, 그 아이를 대하던 태도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지난 글을 세상에 내놓은 날로부터 약 15년이 지났다. 그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다. 국제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종전의 『국제장애분류』를 대신하는 『국제기능분류』를 새롭게 내놓았고, 1978년 영국의 특수교육요구[학습곤란](SEN: special educational needs[learning difficulty])을 이어받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CERI, 2004)의 『교육의 평등성: 장애(불능), 학습곤란, 실조를 지닌 학생』의 발간을 통한 ‘장애(불능)·곤란·실조: 특수교육요구’(SENDDD: special educational needs disability, difficulty, and disadvantage) 체제의 채택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sup>1)</sup>(약칭 「특수교육법」)이 대체 입법되었다. 이와 거의 동시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권리및지원에 관한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도 만들어졌다. 또다시 내게 물어본다.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인, 시각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에 공통되어 있고 이를 아울러 호칭하는 ‘장애’란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것일까?”

나 자신에게 던진 이 작고 소박한(?) 질문이 이 연구를 추동케 했다. 이 글은 그에 대해 내 나름대로 조사 결과를 정리한 답변이다. 이를 위해 ‘장애’란 말이 들어 있는 문헌과 법률문서 등의 내용을 조동일 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인문학문의 사명』(1997: 30-56)에서 제시한 ‘4학8방론’의 틀에 맞추어 살핀다. 이 글은 다음의 순서로 전개한다. 첫째, ‘장애’에 관한 서구(제1세계)의 담론을 국내에 소개한 ‘수입학’(또는 ‘양학’)의 연구성과를 제시한다. 둘째, ‘장애’에 관한 그동안의 담론이 거둔 ‘자립학’(또는 ‘국학’)의 연구성과를 제시한다. 셋째, ‘자립학’의 연구성과와 ‘수입학’의 연구성과를 ‘시비학’의 입장에서 따져 비교한다.

## II. 장애개념체계에 대한 양학적 논의

### 1. 양학적 논의의 방향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의 특수교육학(와 또는 장애학)은 국학(國學)보다 양학(洋學)에 가깝다. 학문으로서 시작이 그렇고, 특수교육학 학문담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개념)가 그렇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양학의 갈래는 둘이다. 그 하나는 ‘수입학(輸入學)’이고, 다른 하나는 ‘시비학(是非學)’이다. ‘수입학’이란 ‘남의 학문 가져와서 자랑하기’라고 했다(조동일, 1997: 30). 제1세계 학문 가져와서 자랑하기를 수입학의 제1방향이라 했고, 제2세계 학문 가져와서 자랑하기를 수입학의 제2방향이라 했다. 그간의 한국특수교육학은 제1방향에서 열심히 ‘수입’해왔다. 제2방향의 ‘수입학’은 거의 하지 않았다. 나는 1·2방향 외에 제3방향도 있을 수 있다고 하며, 기왕 ‘수입학’에

1) 이 글에서는 법제처(www.moleg.go.kr)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모두 붙여 쓰되 「」로 묶어 표시한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이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주소가 최근 www.law.go.kr에서 www.korealaw.go.kr로 바뀌었다.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제3세계로 한국특수교육학의 수입원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했다(한현민, 2008).

남의 학문을 가져와서 나무라기를 ‘시비학’이라고 했다(조동일, 1997: 31). 가져와서 나무라는 남의 학문이 제1세계 학문일 때 이를 제1방향이라 하고, 제2세계 학문일 때 이를 제2방향이라고 구분했다. 수입학에 제3방향이 있다면, 시비학도 제3의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제3세계 학문을 가져와서 나무라기, 또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그것일 것이다. ‘시비학’에서 그동안 해온 한국특수교육학의 학문담론과 성과는 거의 없다. 그 방향을 떠나 남의 학문을 가져와서 ‘소개’하고 ‘자랑’했을 뿐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작업은 하지 않아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현실과의 비교를 통한 ‘가공’이 없이 이 땅(학문만이 아니라 현장에도)에 뿌리를 내렸다. 우리 학문세계와 생활세계에 뿌리내린 것이 어찌면 원형대로가 아니라 소개하고 자랑한 학문 중사자의 필요에 따른 ‘첨삭’ 또는 ‘왜곡’된 남의 학문인지도 모른다.

전통시대 한국(조선까지를 말한다)의 학문세계에서도 ‘수입학’이 있었다. 중국이 학문 수입의 주요 원천이었고, 이를 넘어선 독자적인 이론체계(예: 퇴계학)를 구축한 ‘창조학’의 학문도 있었다. 중국에서 수입한 학문을 이웃 일본[倭]에 수출도 했고, 때론 수입한 것도 있었을 것이다. 세상이 급변했고 개항을 통해 외국과의 관계도 크게 달라졌다.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을 거쳐 제국주의 일본에 의한 국권상실(망국)에 이르는 동안, 학문의 수입원이 일본으로, 일제 패망 후 광복과 함께 들어선 미군정 시대에는 미국이 학문의 주 수입원이었다. 수입학 제1방향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는 중국에서 수입한 또는 우리 학문을 수출하던 ‘자랑스러운’ 역사적 관계가 뒤바뀌어 일본 학문에서 수입하는 또는 일본을 통해 양학을 수입하는(이를 ‘이중번역’이라고 함) ‘부끄러운’ 처지로 전락했다. 그때 수입되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찌꺼기를 우리는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殘在)’라 한다. 한편 근자에 G2로 등장한 ‘중국’은 제2세계의 대표로 우리 앞에 서 있다. 잠재적인 제2방향의 학문 수입원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불편하지만, 별 도리가 없다.

한국에는 한국 나름의 ‘공간’적 특수성과 ‘시간(시대)’적 특수성이 있음을 나를 포함한 학문 종사자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학문 종사자가 자기네 말로 학문 또는 그들의 영향권 내에서 우리네 학문 종사자가 따라한 학문(수입학)만이 아니라, 우리 학문 종사자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말로 한 학문(자립학)도 시비학 학문담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1방향 수입학의 연구성과만이 아니라 우리 학문의 과거(주로 일제·미군정 시대) 사실에 대한 자립학적 연구성과도 시비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학문담론은 기본적으로 ‘수입학’ 제1방향이다. 다른 편에서는 ‘시비학’ 제1방향이다. ‘자립학’적 학문담론을 전개하고 이를 비교하기 위한

토대이기도 하다. ‘공간’적 ‘보편성’에 중점을 두고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국제기구,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의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와 그 변천을 살핀다. 그 속에 있는 주요 용어의 정의(定意)와 함께 자의(字意)를 따져본다.<sup>2)</sup>

## 2. WHO의 ICIDH · ICIDH-2 · ICF

오늘날의 ‘장애(인)’ 그 자체에 대한 학문연구는 보건의료 분야의 학문, 특히 의학이 주도했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경우도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연합(UN)과 또는 그 산하의 국제기구 중에서 장애라는 개념의 용어정의를 제시한 곳은 세계보건기구(WHO),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노동기구(ILO)가 대표적이다. 인간의 삶이 일상적인 삶(생활), 공부(교육), 일(근로·노동)로 나눌 수 있고, 우리 정부에도 각각 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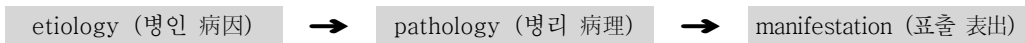
국제사회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일로는 국제노동기구(ILO) 제38차 총회(ILC: 1955.6.22, 제네바)에서 채택한 “장애[불능]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Vocational Rehabilitation [Disabled] Recommendation: R099)를 들 수 있다. 이 권고의 제 I 장(정의) 제1조에서 “이 권고의 목적상, 장애인이란 용어는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로 적합한 고용을 확보·유지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을 의미함”(제b항)다고 정의했던 것이다(박옥희, 2000: 11 일부 수정 [밑줄] 재인용). 이런 사정 등으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경우에는 국제연합(UN)의 제30차 총회(1975.12.9)에서 채택된 “장애[불능]인권리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for Disabled Persons) 결의안(제3447호)이 가장 중요하다. 그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완전참여와 평등”(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을 모토로 1981년을 “세계장애[불능]인의 해”(IYDP: 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로 선포했다. “세계장애[불능]인의 해”를 앞둔 197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장애[불능]는 개인과 그 환경 간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함”다는 선언도 있었다(박옥희, 2000: 11 재인용). 1981년에는 “세계장애[불능]인관련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을 입안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것이 1982년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계획을 국제단체와 지역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정부와 지역그룹(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행하는데 필요한 개념구조를 제공할

2) 영국의 특수교육요구(SEN: special educational needs), 미국의 사람 우선의 어법(people-first language), 일본의 장애(障害) 등 개별 국가의 사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특수교육요구: 장애·곤란·실조 등을 위주로 하여 이들 개별 단어의 어원과 의미, 한국어 번역어까지 살펴보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고, 글도 그렇게 썼으나, 지면 수 제한 등의 사유로 다시 썼다.

목적으로, 국제연합 총회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을 “국제연합 장애인의 10년”을 선포했다. 앞의 국제노동기구 권고는 1983년 “장애[불능]인의 직업재활·고용에 관한 권고”(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sons] Recommendation)로 더욱 확대되었다. 국제연합의 1975년 선언과 국제노동기구의 1983년 권고(제1조)에서 “장애[불능]인”(disabled person)이란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975년 장애인권리선언] 장애인이란 용어는 어떠한 사람이든 선천적이든 그렇지 않은 신체적 능력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의 결과로 정상적인 개인생활과 또는 사회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는 전부 또는 일부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 [1983년 장애인직업재활·고용에 관한 권고] 이 협약의 목적상, 장애인이란 용어는 적절하게 절차에 따라 인정된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로 적합한 고용을 확보·유지·발전시킬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장애 그 자체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이란 모토 아래 inclusion(inclusive education)을 실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보건기구는 광범위한 연구·협의 등을 통해 ‘장애’라는 개념의 가장 정밀한 용어정의와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활동은 모두 1975년 선언에 기반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교의 기준이다. 이 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장애분류를 통해 장애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용되는 장애 개념의 의미와 분류 표준(기준)을 제시하기 이전에는 장애의 발생 과정이 [그림 II-1]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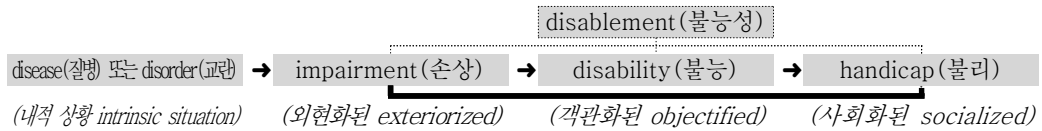
[그림 II-1] 장애의 의학(의료)적 모형

1980년 이전의 ‘의학(의료)적 모형’은 질병이나 이상조건을 야기하는 원인이 있어(병인), 그로 인해(몸의) 구조나 기능이 정상을 이탈하여 특정 질병을 구성하거나 특징을 이루게 되어(병리), 밖으로 드러난 것(표출)이 ‘질병(disease)’이고 이것을 곧 장애로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이후의 국제장애분류에서 ‘impairment’를 야기하는 조건으로 ‘disease/disorder’가 제시되어 있어 이 모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념의 선이해(先理解)를 바탕으로 하여 [그림 II-1]이 설명하는 ‘장애’ 발생의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장애’는 그 원인이 어떤 ‘질병’이고, 그 ‘질병’을 일으키는 어떤 것[병인(病因)]이 유전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또는 선천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원인이 되어 우리 몸(심신을 모두 포함)의 구조나 기능을 변화시켜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고[병리(病理)], 그러한 변화가 몸의 안에서 바깥으로 드러난 것[표출(表出)]이 곧 ‘장애’인 것이다. 이것은 ‘병’을 순수하게 개인의 문제, 좁게는 몸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장애’를 규정하는 ‘의학(의료)적 입장의 모형’(medical model)인 것이다. 결국 ‘병’이든 ‘장애’든 “개인의 비극(personal tragedy)”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가 1980년 국제장애분류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게 된 것도 의학(의료)적 모형이 지닌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장애 발생 과정과 그 구체적인 의미는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 세계보건기구의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

출처: WHO (1980: 3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 Geneva, Switzerland. 일부 수정함.

이 그림에 있는 말들 중에서 disease와 disorder를 구분하여 별다르게 언급하고 있는 국내 문헌이 없다. impairment를 초래하는 내적 상황을 이 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뜻일 것이다. 우선 disease는 우리가 아는 대로 ‘병’이다. 질병(疾病), 질환(疾患) 등의 말로 옮길 수 있다. disorder는 『정신장애 진단·통계편람』(DSM)에 있는 진단명(장애들), 예컨대 major depressive disorde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의 경우처럼, 기능(활동)상의 장애(예: 출근하지 못함, 집중하지 못함)를 말하는 것일 뿐 그런 상태를 갖게 한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기에 질병(disease)이라고 할 수 없을 때 쓰는 말이다(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정신건강 의학과 채정호 교수와의 개인적 대화[personal communication], 2017.4.12). 이 글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disease를 ‘질병(疾病)’으로, disorder는 사전적 의미를 반영하여 ‘교란(攪亂)’으로 옮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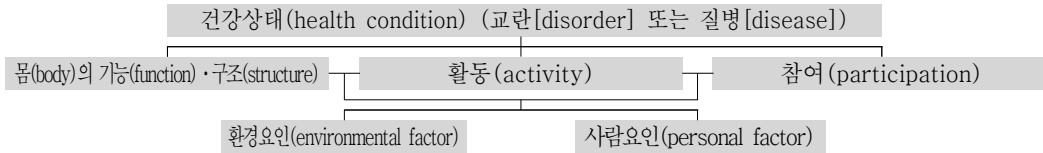
‘질병 또는 교란’ 이후의 세 용어의 뜻을 원문의 뜻을 최대한 살려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WHO, 1980: 27-29). 첫째, ‘impairment’는 “어떤 것이든 심리



학적, 생리학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 또는 기능의 상실이나 이상"이다. 둘째, 'disability'는 "(손상의 결과로) 어떤 활동을 어떤 것이든 인간 존재에 정상적인 것이라고 간주되는 방식으로 또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다. 셋째, 'handicap'은 "손상 또는 불능의 결과로 어떤 사람에게 (연령, 성별,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역할의 충실한 수행을 제한 또는 방해하는 불이익"이다.

이 세 용어는 자의(字意)로만 말하면 손상(損傷), 불능(不能), 불리(不利)다. 정의에 담긴 의미를 모두 담아 말하면, 각각 심신구조기능의 상실·이상, 정상활동수행의 제약·결여, 정상역할수행의 제한·방해 상태(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의 심신의 구조·기능을 상실·이상하게 하는 것(그런 상태), 정상활동수행을 제약·결여하게 하는 것(그런 상태), 정상역할수행을 제한·방해하는 것(그런 상태)이 '건강경험이란 맥락' 내에 있는 것일 때, 그 '것'과 '상태'를 우리글 전문어(학술용어)로 표현하면, 손상, 불능, 불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일상언어생활에서 우리말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구분할 수 없어) 모두 장애라고 말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종전의 국제장애분류(ICIDH)를 개편하여 1999년에 ICIDH-2를 제시했다. 1980년 분류를 제시한 이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일본재활협회 주최로 1988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국제장애분류 개편을 위한 보고회의에서 국제장애분류의 ① 세 용어를 손상, 활동, 참여로 변경하고, ② 이 셋을 포괄하는 용어로 'disablement'란 말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1997년에는 분류의 이름도 ③ 국제손상·활동·참여분류: 불능·기능의 차원 요강(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Activities, & Participation: A Manual of Dimensions of Disablement and Functioning)으로 제안되어 1999년 개정안이 확정 예정되어 있었다(전용호, 2000: 36-37). 그러나 최종 확정된 ICIDH-2는 ①만 채택되었고, 이것이 다시 2001년에 종전의 분류를 대신한 새로운 분류체계로 제시된 것이 국제기능성분류(ICF)다. 이 두 보고서에 담긴 장애개념체계의 구조도는 [그림 II-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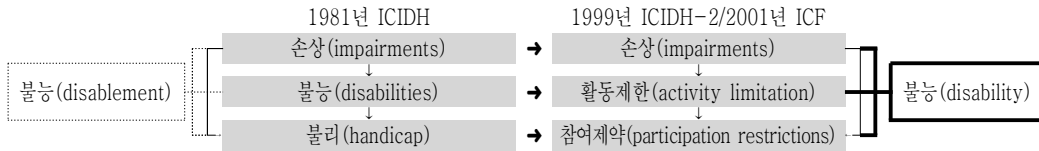
[그림 II-3] 세계보건기구의 1999년 국제장애분류(ICIDH)-2와 2001년 국제기능성분류(ICF)

출처: WHO (1999: 23).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and disabilities (ICIDH-2)*. Geneva, Switzerland; WHO (200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ies, and health (ICF)*. Geneva, Switzerland. 일부 수정함.

[그림 II-3]의 장애개념체계는 종전 것과 상당히 다르다. 첫째, 개인(personal)요인과 환경(environmental)요인을 포함한 ‘맥락(contextual)요인’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환경요인은 “인간이 살고 있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면서 개인요인과 상호작용하여 “그 사람의 기능성(수행)을 방해 또는 촉진”하는 “물리적·사회적·태도적 환경”으로 정의되었다(WHO, 2001: 213).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기능(function)’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기능성[functioning]’) 그렇지 못하느냐(‘불능성’) 그 여부 내지 정도는 그 사람 자신의 개인요인과 그가 처한 환경요인에 달려 있다.

둘째, ‘functioning(기능성)’과 ‘disability(불능성)’은 “[건강상의 어떤 조건을 지닌] 개인과 그 개인의 맥락요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나타낸다. ‘기능성’은 “신체[몸]의 기능, 신체[몸]의 구조, 활동, 참여, 이 넷을 포괄하여 총칭하는 용어”이고, ‘불능성’은 “손상, 활동제한, 참여제한, 이 셋을 포괄하여 총칭하는 용어”다.

셋째, ‘impairments(손상)’는 종전과 똑같이 명명되었다. “상당한 이탈 또는 상실과 같은 신체(몸) 기능과 구조의 문제”로 정의되며, 신체[몸]의 기능(body functions)은 “몸의 여러 체계(體系)의 생리학적 기능(심리학적 기능 포함)”으로, 신체[몸]의 구조(body structures)는 “기관, 사지와 그 구성요소들과 같은 몸의 해부학적 부위들”로 구분 정의되었다. 넷째, ‘disability(불능)’를 대신하여 ‘activity limitations(활동제한)’이란 용어가 도입되었고, “개인이 여러 활동들을 실제로 행할 때 가질 수 있는 곤란(어려움)”으로 정의되었다. 이 정의에서 “활동”이란 말은 “개인이 과업을 하거나 또는 행위를 실제로 행하는 것”이다. 다섯째, ‘handicap(불리)’ 역시 ‘participation restrictions(참여제한)’이란 새로운 용어로 대체되었고, “개인이 ‘삶의 상황에 참여(개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 정의되었다. 참여는 “삶의 상황에 개입(연루)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1980년 분류와 비교하면 [그림 II-4]와 같다.



[그림 II-4] 세계보건기구 국제장애분류 비교

출처: WHO (1980: 3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 Geneva, Switzerland; WHO (1999: 23).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and disabilities (ICIDH-2)*. Geneva, Switzerland; WHO (200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ies, and health (ICF)*. Geneva, Switzerland. 이상을 정리하여 비교한 것임.

장애를 지닌 ‘사람’의 ‘장애’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태도, 물건, 건물, 제도, 정책 등 ‘사회’의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장애’라는 의미가 강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모자를 들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cap in hand) 사람으로 조롱하는 의미(한현민, 2001)를 연상하게 하는 ‘handicap’이란 말을 폐기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로를 설명하여 ‘장애’라고 통칭하는 말[generic term]의 세부적인 의미 차이를 구분한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반면 셋 중 둘을 각각 ‘활동제한’과 ‘참여제한’으로 개명(改名)한 것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수사로서, 앞으로 장애인이 제한받거나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우리들의 태도와 행동의 방향으로서 참 훌륭하지만, 그 말들이 일상의 언어생활 또는 법률이나 학술담론에서 용어로 사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제 비로소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등 각종 장애를 전체로 갈음하는 용어를 갖게 되었다. ‘장애(障礙)’란 곧 ‘불능(不能)’(disability)함이다. ‘장애’란 말이 이상과 같은 의미를 제대로 정확히 담고 있는 말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 3. 관점의 전환과 명칭의 변화

위에서 검토한 WHO(1999, 2001)의 국제장애(또는 기능성)분류는 장애(disability)와 기능성(functioning)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적 모형들이 제안되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 ‘의학적 모형’(medical model)과 ‘사회적 모형’(social model), 이 두 모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생명·심리·사회모형(biopsychosocial model)”이라 명명했다. 1980년 분류가 처음이다. 사람이 가진 “기능성”의 다양한 차원을 통합하기 위해 사용된 접근이라고 했다. 1999년 분류(ICIDH-2)는 종합적인 하나의 분류를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그 결과로 건강의 다른 차원들을 생명 수준에서, 개인 수준에서, 사회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논리 정연한 견해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용하는 모형이란 말은 구성개념

또는 패러다임과 같은 뜻이라고 분명히 밝혔다(WHO, 1999: 25). 패러다임과 같은 뜻으로, 세계장애분류(1980, 1999, 2001) 속으로 통합된 이 두 모형은 본래 객관성과 주관성의 양극단에 각각 위치하여 서로 충돌하는 모형이다(패러다임과 그 전환이란 개념을 특수교육학에 적용하여 세세히 설명한 예로는 Skrtic[1986, 1991] 등이 있고, WHO 분류의 여러 대안적 분류를 논의한 예는 이유훈[2002]이 대표적이다).

WHO(1999, 2001)에 따르면, 모형 내지 패러다임의 하나로서 ‘의학적 모형’에서 보는 ‘불능’(여기서는 손상, 활동제한, 참여제약을 포괄하는 말이다)은 질병, 외상 또는 그 밖의 건강조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개인의 문제다. 질병이나 외상 등은 전문가에 의한 개별 치료의 형태로 제공되는 의료(醫療 medical care)를 필요로 하는 반면, 불능을 관리하는 일은 개인의 치료(cure) 내지 사회적응과 행동변화가 목적이다. 의료가 주요 이슈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치적 수준에서 보이는 원칙적인 반응은 보건정책의 수정 또는 개혁이다.

이와 반대편에 서서 ‘불능’을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사회적 모형’의 원칙적인 입장은 불능이 있는 개인을 사회로 완전 통합(full integration)하는 문제가 이슈가 된다. 불능은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모여 만들어진 복합체이며, 그 중 상당수는 사회의 환경이 만든 것들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의 관리는 사회적 행위가 필요하며, 불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영역의 사회생활에 완전 참여(full participation)하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환경의 수정은 거시적으로 볼 때 사회의 집합적인 책임이기에, 이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변화에 필요한 태도 내지 이념의 문제가 된다. 정치적 수준의 인권 문제가 되기에 ‘불능’의 문제는 정치 쟁점이다.

이상에서 WHO의 장애분류(1999, 2001)가 설명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를 이해할 때 비로소 국내문헌에 소개되어 있는 학문담론을 읽어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다음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불능은 팔, 다리와 같은 특정 신체부위 또는 기관(organ)이 없거나 기능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Blackhurst, 1985). 장애는 불능으로 인해 불편함을 가지는 것으로서 역할수행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McCarthy, 1984). (Snea & Bauer, 1994; 안병환·조용태, 1995: 35 재인용).

위에서 ‘장애’가 원문에서는 ‘handicap’임을 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다. 반면의 경우를 보자. Shontz(1980: 26)는 장애(에 나타내 보이는 사회·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사회심리학 이론(구체적으로 장이론)의 입장을 Meyerson(1971)의 이론을 빌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신현순, 1985: 26 재인용).<sup>3)</sup>

3) Shontz(1980)와 아래의 Bartel과 Guskin(1980)의 글은 Cruickshank의 편저 *Psychology of*

그의 이론은 “장애(불능 disability)가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객관적인 것(thing)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판단”임을 기본 전제로 한다. “장애(불리 handicap)”란 말은 어떤 사람이 비전형적이라고 간주될 만큼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다르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에게 사회가 가하는 제재(제한)로 이해했다. / Meyerson은 신체[몸]조건이 일반적인 표준과 현격히 다를 때 그걸 “장애(불능)”라고 부르는 것보다 “비전형적 신체(atypical physique)”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불능(disability)”이란 말은 그 자체가 불리(不利)를 주기(handicapping)를 시사한다. “비전형적 신체”란 말은 어떠한 상실(loss)이나 획득(gain)도 그 조건의 탓이 아니며, 단지 사회가 정상적인 것, 평균적인 것, 또는 필요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밑줄 친 부분은 내가 고치거나 더한 것이다)

위의 글에서 읽을 수 있는 Meyerson(1971)과 Shonz(1980)의 생각은 같은 책의 두 번째 장(제목 “사회현상으로 보는 장애[불리]: A handicap as a social phenomenon)에서 Bartel과 Guskin(1980)이 취한 입장과 거의 유사하다. 이 글과 이 글에서 자신들의 장애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밝힌 Friedson(1965: 72)의 글을 차례대로 다시 인용한다.

불리는 사회적 조건, 사회가 만든 조건이다. 한 개인의 몸 또는 행동의 상태는 그가 속한 사회, 다른 사람 또는 본인 자신이 자신의 상태가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범위에 한해서 불리가 된다. 이러한 정의는 언어적 명명, 뚜렷이 구별되는 대인반응과 또는 특수한 치료방법으로 구성되며, 이 모든 것들은 매력 없음, 무능력함, 또는 이 둘을 모두 암시한다. 이러한 사회적 정의의 결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환경과 행동의 조성이고, 이것은 순차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정상적인 삶의 패턴을 점점 더 많이 박탈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장애(불리)가 있다고 수긍하게 하는 것이다. (Bartel & Guskin, 1980: 69) / Friedson의 장애(불리)의 사회적 정의가 우리들의 것과 가장 가깝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애(불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불이는 오칭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차이라는 오명이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장애자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그 사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상적이거나 적합하다는 것으로부터 이탈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Bartel & Guskin, 1980: 45)

*exceptional children and youth*(제4판)에 실려 있고, 내가 대구대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배울 때 2학년 교과목 “특수아동심리”의 부교재였다. 이 책을 편역한 국내서(신현순, 1985)가 있지만, 그 역문(譯文)을 그대로 취하지 않고, 내가 빼고 보태고 달리 옮겼다.

원문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읽어낼 수 없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장애인’의 ‘장애’가 왜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 한국특수교육학의 수입학 수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일례일 뿐이다. 현실은 늘 불편하기 마련이다.

### III. 전통시대의 장애개념체계에 대한 자립학적 논의

#### 1. 전통시대의 지칭 또는 호칭

어떤 개념의 뜻을 밝히는 정의(定議)는 그 개념의 속성을 나열하는 것과 그 개념에 속하는 것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앞의 것을 내포(內包)라 하고, 뒤의 것을 외연(外延)이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총칭하는 ‘장애’라는 개념이 어떤 뜻인지를 살피는 작업 역시 ‘장애’라는 말이 지닌 속성을 나열하는 방법과 ‘장애’에 속하는 것들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 나는 ‘장애’라는 개념(용어)의 정의를 밝히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이 말이 과연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그 역사적 근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란 말이 예전부터 우리들 언어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인지, 아니면 지난날 쓰였던 어떤 말을 대신하게 된 말인지, 그것도 아니면 과거엔 그것(또는 그 사람)을 지칭(또는 호칭)하던 말조차 없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에 아무런 소용가치도 주지 못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시도를 또다시 해보는 것은 나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좀체 억누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동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쯤 어렵게 학업을 시작하고 이어가던 어린 시절 내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고 또 특수교육(학)계 등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답해야 한다는 걸 일러준 고마운 분의 물음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분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아가(雅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이문열, 2000)라는 자전적 소설에서 작가가 한 말부터 조금 길게 인용해본다.

이제는 부르는 쪽도 불리우는 쪽도 꺼려하는 환유(換喻)들이 있다. 앓은뱅이 절름발이 곰배팔이 귀머거리 병어리 청맹(靑盲)과니 용천뱅이 곱사등이 언청이 외팔이 땅딸이 난쟁이 키다리같이 신체적인 흠결(欠缺)이나 질병의 후유증으로 그 사람 전체를 이르는 말들이 그러하고, 미치광이 반편(半偏)이 비렁뱅이 바람둥이 덜렁뱅이 허풍선이 억보 떼쟁이 악바리 맹추 속매이 오입쟁이같이 정신적인 장애 혹은 불균형을 들어 비유의 대상을 갈음하는 말들이 그러하다, / 그 환유들의 임자도 요즘 세상

에서는 만나보기 쉽지 않다. 예전에 그들은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이루었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는 것은 그러한 갈음의 말뿐이었다. 그때는 누구도 그들을 우리와 다른 별난 존재로 여기는 법이 없었고, 더군다나 그들이 격리되거나 소제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우리 곁에서 하나둘 사라졌다. 정신병원과 각종 수용소, 재활원, 보호소 같은 시설들이 그들 중 생산 능력이 없으면서 사회의 미관(美觀)과 편의만 해치는 이들을 먼저 골라 데려갔다. 그리고 예전의 환유 대신 구호 대상자, 정신병자, 심신미약자(心神微弱者), 장애인, 지체부자유자 같은 전문화되고 기능적인 호칭을 그들에게 부여한 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감추어버렸다. (이문열, 2000: 7-8)

위의 글에서 나는 나의 궁금증을 풀 실마리가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또는 견해, 경험에 바탕을 둔 생각·기억)을 찾았다. 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가장 흥미로운 첫 번째 사실은 앓은뱅이, 절름발이 등 ‘개별’ 존재들의 호칭이 아니라 오늘날의 ‘장애(인)’과 같이 이들을 하나의 ‘전체’ 내지 ‘집단’으로 ‘통칭·총칭’하는 호칭·지칭이 없다는 점이다. 나는 작가가 오늘날의 ‘장애’와 같이 예전의 호칭을 쓰지 않고 이들 존재가 지닌 속성을 빌어 이들을 ‘환유’한,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둘째, 오늘날처럼 그들을 나와 다른 ‘별난(special)’ 존재, ‘독특한(unique)’ 존재, ‘이상(abnormal)’한 존재, 우리 ‘밖의(exceptional)’ 존재로 여기지 않았고, ‘그들’을 ‘우리’와 구분 짓는 것은 그들의 속성을 갈음하는 호칭뿐이었으며,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이루었다는 것이다(이 부분에 대한 작가의 해설은 뒤에서 다시 인용하여 논의한다).

셋째,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환유(換喻)’의 자리를 구호(보호)대상자, 정신병자, 장애자(인) 등과 같은 ‘전문화되고 기능적인 호칭’이 대신하게 되면서, 과거에 서로 부르고 불렀던 호칭을 이제는 그렇게 부르는 쪽도 그렇게 불리는 쪽도 ‘꺼려하는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문화된 호칭 붙임(labeling)과 함께 (정신)병원, 수용소, 보호소, 재활원,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으로 격리(隔離)수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글과 앞서 소개한 나의 개인적 경험을 내 나이 또래 정도의 사람들은 공감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과문(寡聞)한 편이라는 점과 또는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나는 것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가 어릴 때에는 ‘장애’ 또는 ‘장애자(인)’이란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지 않다. 내 기억에도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전문용어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간간히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어떤 말이 지금의 ‘장애(인)’를 지칭·호칭했던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국어국문학 전공자인 정창권 교수(2005)가 제공한다.

우선 그의 문제 제기부터 살펴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적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분히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전통시대 장애인사를 이야기하곤 하였다. 역사 속의 장애인을 아무런 전제 없이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러한 접근 방식은 자칫 잘못했다간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낼 수도 있다. ... / 우선 장애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인식에 따라 장애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 / 또한 장애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질병과 장애도 인간사에 속해 있어서 시대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왔다. ...

이 글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과거의 장애(인)와 그 역사를 논하는 방식의 접근은 돌이키기 어려운 오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전의 전통시대 장애(인)에 대한 논의는 당시 사회 장애(인)의 시대적 ‘사회성’과 ‘역사성’을 두루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인식(또는 태도) 정도에 따라 ‘장애’의 유무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라 ‘장애(인)’(와 질병)의 유무와 범위도 거듭 변천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장애의 결정 기준과 함께 장애에 포함되는 정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의 ‘사회성’ 문제는 ‘공간(또는 지역·지리)적’ 보편성·특수성의 문제라 할 수 있고, 장애의 ‘역사성’ 문제는 ‘시간(시대)적’ 보편성·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뒤에서 전개할 것이다).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유개념(generic term)으로서 ‘장애’ 호칭을 정창권(2005)은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전통 시대 사람들은 장애인을 대개 병에 걸린 사람, 곧 병신 혹은 병자라 불렀고, 기록상으론 폐질(廢疾)(자), 잔질(殘疾)(자), 독질(篤疾)(자)이라 하였다. 당시 중국에서 장애인을 흔히 폐질, 잔질이라 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기록했던 듯하다.

그 근거로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전통시대 기록물을 들었다. 이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예시하였다(『조선왕조실록』의 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국가 공식 역문이다).

기사<sup>26</sup>에 개경의 남녀 가운데 80세 이상인 자와 중환자, 폐질자에게 술과 음식, 차, 피륙 등을 내리되 차등 있게 하였다. (『고려사』 현종 13년 9월조; 정창권, 2005 재인용) / 호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농망기(農忙期)를 만났으니, 농사에 힘써야 될 건장한 남녀들에게는 모두 환상(還上)<sup>=환곡(還穀): 조선 시대에 곡식을 사창(社倉)에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면 일</sup>을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과 고독(鰥寡孤獨)과 잔질(殘疾) 폐질(廢疾)과 빌어먹는 자에게만은 진제(賑濟)<sup>=공으로 주는 곡식</sup>를



주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2월 4일 을묘 2번째기사: 환상과 진제의 뜻은 내가 붙인 것이다)

정창권(2005)은 이와 같이 전통시대 기록물에서는 환과고독과 함께, 폐질(자), 잔질(자), 독질(자)이란 용어가 빈번히 나와 있다고 했다. 그 말들이 바로 당시 ‘장애인’을 일컫는 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 각각에 대해 호칭하는 일정한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했다. 오늘날 ‘시각장애’인 ‘맹(盲)’의 경우를 예시하여 폐질이라 하기도 하고, 잔질, 독질이라 하기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선왕조실록』(2017.4.16)에 기록된 다음의 기록물도 예시했다(이 역시 국사편찬위원회의 국가 공식 역문을 제시한다).

형률의 조문에, 손가락 둘이 없거나 발가락 셋이 없으며, 손발에 큰 엄지 가락이 없는 사람을 잔질(殘疾)로 인정하는데, (『연산군일기』 44권, 연산 8년 6월 15일 을묘 3번째기사) / 이른바 폐질(廢疾)이라고 말한 것은 일지(一肢)<sup>635</sup>=팔 다리 중 하나를 쓰지 못하는 것이고, 독질(篤疾)이란 것은 이지(二肢)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11월 20일 신유 1번째기사)

위의 인용 글에서와 달리, 전통시대에는 이 세 말을 일정하게 구분하여 호칭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기록과 함께 우리 역사와 문헌(역사·속담, 설화, 문학작품, 종교, 직업)에 나타난 장애인관을 검토한 강수균·조홍중(2003: 12-19)이 기술한 내용을 보면, 환과고독(鰥寡孤獨)의 환(鰥)은 ‘61세 이상’의 부인이 없는 남성(홀아비)을, 과(寡)란 ‘50세 이상’ 남편 없는 여성(과부)을, 고(孤)란 ‘16세 이상’의 아버지(부모)가 없는 아이(고아)를, 독(獨)’이란 ‘61세 이상’의 자녀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독질(毒疾)이란 불구(不具)의 폐질자를 말하는 것이고, 폐질(廢疾)이란 맹인, 절름발이, 나병환자, 안질환자, 병어리, 꼽추, 고자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잔질(殘疾)에 대한 언급은 없다. 우리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근자에 완성된 『조선왕조실록』을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sillok.history.go.kr)에서 찾아보았다. 그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색어를 ① “잔질 殘疾”로 했을 때 원문 50건, 국역 20건(총 70건), ② “독질 篤疾”로 찾았을 때 원문 78건, 국역 30건(총 108건), ③ “폐질 廢疾”로 했을 때 원문 161건, 국역 101건(총 262건)이 검색되었다. 원문을 기준으로 사용 빈도를 보면, 폐질, 독질, 잔질의 순이다. 다시 검색하는 말을 ④ “잔질 殘疾 독질 篤疾”로 했을 때 원문 3건, 국역 3건(총 6건이나 원문과 국역이 모두 『세조실록』 9권, 22권, 『성종실록』 162권의 것으로 내용이 같음), ⑤ “잔질 殘疾 폐질 廢疾”

31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8권 제3호)

로 했을 때 원문 2건, 국역 4건(총 6건이나 원문의 경우 ④의 『세조실록』 22권, 『성종실록』 162권과 같고, 국역의 경우 『세종실록』 2권을 제외하고 ④와 동일함), ⑥ “독질 篤疾 폐질 廢疾”로 찾았을 때 원문 21건, 국역 17건(총 38건), ⑦ “잔질 殘疾 독질 篤疾 폐질 廢疾” 모두 넣었을 때 원문 2건, 국역 2건(총 4건)이 있었다. 이와 함께, 현대어 ⑧ “장애 障礙”(원문 8건, 국역 16건), ⑨ “장해 障害”(원문에 없고, 국역에 1건)를 검색어로도 찾아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조선왕조실록 검색결과요약표

구분	검색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원문	50	161	78	2	3	21	2	8	-
국문	20	101	30	4	3	17	2	16	1
계	70	262	109	6	6	38	4	24	1

비고: 검색어 ①=잔질 殘疾, ②=폐질 廢疾, ③=독질 篤疾, ④=잔질 殘疾 폐질 廢疾, ⑤=잔질 殘疾 독질 篤疾, ⑥=독질 篤疾 폐질 廢疾, ⑦=잔질 殘疾 독질 篤疾 폐질 廢疾, ⑧=장애 障礙, ⑨=장해 障害

나는 정창권(2005)의 글에 나오는 일지(一肢)를 사지(四肢), 즉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중 하나, 이지(二肢)를 그 중 둘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생각했다. ① 왼팔, ② 오른팔, ③ 왼다리, ④ 오른다리 각각(이상 일지), ⑤ 왼팔과 오른팔, ⑥ 왼다리와 오른다리, ⑦ 왼팔과 왼다리, ⑧ 왼팔과 오른다리, ⑨ 오른팔과 왼다리, ⑩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이상, 이지)이 그것이다. ①-④를 폐질, ⑤-⑩을 독질로 보았다. 그 결과 잔질, 폐질, 독질을 지금 식으로 말해 ‘사지(四肢)장애’로 보았다. 그러나 국가 공식 『조선왕조실록』 역문의 주에는 일지가 팔다리 중 하나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당시의 장애인 호칭이라 말한 “그 말들”은 오늘날의 장애만이 아니라 질병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정창권(2005)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날 장애의 정도(등급)를 그 시대 나름의 방식으로 표시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지(肢), 즉 양팔과 양다리에 손가락[指]이 포함되니, 이것이 없거나(상실) 쓰지 못하는 것(기능의 이상)을 한마디에 모두 담아 표현한다면, 지(肢)의 장애, 지지(指肢)의 장애, 또는 사지(四肢)의 장애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지체(肢體)’장애는 몸통[체간(體幹)]까지 포함하는 것이니 개념적 외연이 다르다. 오늘날 방식으로 구분한다면, ‘독질’을 ‘지체장애’ 1급, ‘폐질’을 2급, ‘잔질’을 3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독질·폐질·잔질은 “없거나 쓰지 못하는 ‘것’[者 thing]”에 쓰인 말일 뿐, 그런 상태나 처지에 있는 ‘사람’(예: 잔질인)에게 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도 조정의 신하들이 국왕(임금)에게 한 말일 뿐, 일반 백성

이 일상적으로 쓴 말은 더더욱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다(이문열, 2000, 참조). 그렇다면 ‘장애’란 개념 또는 ‘장애’란 말이 이 땅에서 있었는가. 있었다면 언제부터 그 말이 사용되었는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가.

근대 이전의 전통시대에 이 땅에서 사용되었던 명칭, 즉 잔질, 폐질, 독질이란 글자의 뜻을 살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동일 교수(1997)가 말한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시비학적 관점이 필요하다. 지난날의 말뜻을 오늘날의 말뜻과 비교하여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연구원(1999)이 펴낸 국어사전의 풀이를 끌어 쓴다. “잔질(殘疾)”이란 사람의 몸에 남아 있는 ‘질병’ 또는 질병이 남아 있는 ‘상태’의 뜻이고, 몸에 질병이 남아 있는 사람, 병치레가 많아 몸이 쇠약해진 사람을 이르는 말로 “잔질‘지’인(殘疾‘之’人)”이란 표현도 보인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5176). ‘폐질(廢疾)’은 고칠 수 없는 병이고, 보험청약을 할 때 피보험자로 지정된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 경제적인 활동력을 잃었을 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뜻으로 “폐질보험(廢疾保險)”(경제[보험])이란 말도 보인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6586). ‘독질(篤疾)’은 매우 위독한 병의 뜻이지만, 요즘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가질(苛疾), 대병(大病), 독룡(篤癩), 중병(重病) 등 유의어는 다른 말에 비해 많은 편이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1603). 같은 음의 ‘독질(毒疾)’이란 말도 있어 “병세가 지독하여 잘 낫지 않는 병”(국립국어연구원, 1999: 1603)을 뜻한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인터넷 사이트 장서각(jsg.aks.ac.kr)에서 “잔질 殘疾”로 검색한 결과(2017.4.18) 69건이 나왔다. “잔질”이 제목에 있는 고서·고문서는 한 편도 없었고, 고도서 본문 68건(출처: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해제 1건(출처: 장서각)만 나왔다. 이 중에는 해제 1건을 포함하여 이 글과 관련이 없는 것도 상당수 있었다. 그 첫 문헌으로 나온 『명수지문(名數咫聞)v5』(고도서 의괘[儀軌]자료로 분류되어 있음)에 잔질·폐질·독질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시한다.

(원문) 三之類下三疾 殘疾[주:一目盲兩耳聾手無二指足無大指指禿瘡無髮久漏下重大癭腫] 廢疾[주:痴啞侏儒腰折一肢廢] 篤癡[주:癡狂兩肢廢兩目盲] / (국역) 아래의 세 무리를 삼질이라 한다. <sup>(삼지류하삼질)</sup> ① 잔질[주: 한 눈 멀(일목맹), 두 귀 먹음(양이농), 손에 두 가락 없음(수무이지), 발에 엄지가락 없음(족무대무지), 터럭 없는 대머리(독창무발: 독창=머리가 희면서 머리털이 끊어지거나 빠져 없어지는 병증), 구루병(구루), 다리에 두껍고 큰 혹과 종기가 남(하중대영종)], ② 폐질[주: 바보·미치광이(치), 병어리(아), 난쟁이(주유), 곰사등이(요절), 한쪽 팔다리 못쓰게 됨(일지폐)], ③ 독질[주: 지랄병(전광=간질), 양쪽 팔다리 못쓰게 됨(양지폐), 두 눈 멀(양목맹)] (국역이 없어 역문은 내가 붙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 내용을 보기에 편하고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

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전통시대의 장애개념체계도

지난날의 잔질, 폐질, 독질(삼질)은 오늘날의 ‘사지(四肢)’장애를 말하는 것이고, 말뜻과 오늘날의 구분으로 말하면, 잔질은 질병의 ‘후유증’으로 3급, 폐질은 ‘불치병’으로 2급, 독질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중병(危重病)’으로 1급의 사지장애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창권(2005)의 말처럼 일정한 기준 없이 잔질, 폐질, 독질에 속하는 사람들을 일상의 언어로 말한다면, 장님(맹), 귀머거리(농), 병어리(아), 절름발이(건벽 등), 바보(치), 미치광이(광), 성치 못한 사람(불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2. 장애인의 존재와 삶의 양식

위에서 알게 된 것과 같이, 오늘날 ‘장애’라 하는 것, ‘장애인’으로 불린 사람들을 과거에는 그런 지칭·호칭으로 불러 지지 않았다. 잔질, 폐질, 독질이라 하는 것이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고, 법령이나 정책의 집행을 위해 썼던 용어(지칭)였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장애인에 상응하는(준하는) 사람들의 존재와 삶의 방식도 지금과는 크게 달랐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문열(2000: 30-31)의 ‘소설’에 있는 글을 다시 길게 인용한다.

그 시절 고향의 부락공동체를 도형으로 그리면 지름을 달리하는 동심원(同心圓)들의 겹 또는 양파의 횡단면(橫斷面)과 비슷하게 될 것 같다. 크기는 하나의 원이지만 그 안에는 기능과 성격을 달리하는 구성원들이 만드는 작은 원들이 여러 겹 들어 있다. 양파를 함께 떠올리는 것은 그 마지막에 따로 고정되고 일체화된 중심이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 ① 맨 바깥에 있는 원은 ‘문둥이’의 오두막과 ‘거지’의 움막집, ‘백정’의 도살장 같은 것들을 잇는 선이 된다. 마을과 다소간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어김없는 공동체의 일부였다. 말라 벗겨져 나갈 때까지는 양파의 맨 바깥 껍질도 양파의 일부이듯이, / ② 그 안쪽에는 흔히 ‘미치광이’로 불리는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와 ‘백치’ 그리고 생산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중증(重症)의 불구자’들로 이루어진 원이 있다. 그들은 마을, 혹은 보다 안쪽 동심원의 누군가로부터 부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때문에 공동체 성원의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법은 없었다. / ③ 그 다음 원은 ‘반편이’로 불리우는 ‘심신미약자’(心神微弱者)나 ‘박약자’(薄弱者), 또는 ‘정신이 온전한 신체장애자’들이 만드는 원이다. 그들에게도 공동체의 동정이나 호의는 여전히 필요했다. 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생산에 참여하여 ‘성한 사람’들이 맡은 기능들의 틈새를 메워주었다. / ④ 마지막 원은 ‘바보’로 대표되는 ‘지려천박자’(智慮淺薄者)들이나 무슨 <둥이> 무슨 <쟁이> 하는 ‘가벼운 편집증후군’(偏執症候群)의 원이다. 그들은 그런 정신적 흠결 때문에 하급 노동에 돌려지기도 하고 세상살이에서 여러 가지 ‘불리’를 입지만 그래도 생산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기능을 할 수 있었다. 대개는 가장 머릿수가 많고, 이탈과 편입이 잦은 동심원이 된다. / ⑤ 그 다음은 ‘몸과 마음이 모두 성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중심이다. 솔직히 말하면, 현대를 살아갈수록 그런 중심내 존재에는 의심이 간다. 이기(利己)만이 거대하게 부푼 이런 시대에는 중심을 이루는 그 개인들이 모두 또 다른 동심원이 되어 양파의 속처럼 하나하나 벗겨지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 시절만 해도 사람들은 그 중심의 고정되고 일체화된 실체를 믿었다. / 당편이는 그 세번째 동심원에서 우리 고향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번호는 구분을 위해 내가 붙인 것임)

이 소설을 시작하는 도입부의 글과 작가 스스로 밝힌 약력에 보이는 생년(1948년) 등을 종합할 때, 이야기의 시작은 1980년 무렵(작가 나이가 33세경으로 추정됨)인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 보고들은 이야기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소설로 세상에 나온 것은 2000년). ‘마을과 사람들의 공간적 존재양식’을 비유한 양파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성한 사람이 모여 만드는 중심”이란 표현과 그에 대한 “솔직한 말”이 나의 주목을 끈다. “성한 사람들”이 중심에 있다면, ‘성치 않은 사람들,’ 달리 말해 ‘상(傷)한<sup>4)</sup> 사람들’이 양파 껍질을 포함한

4) 『표준국어대사전』의 낱말 뜻과 어원 풀이는 다음과 같다. “상<sup>21</sup>(傷) ‘상하다<sup>2)</sup>’의 어근 / 상하다<sup>2)</sup> (동) [I] ①물건이 깨어지거나 헐다. ②음식이 부패하다. ③몸이 여위어 축이 나다. ④몸을 다쳐 상처를 입다. [II] […에 (…을)] 근심, 슬픔, 노여움 따위로 마음이 언짢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3265). / 성<sup>2)</sup> ‘성하다<sup>1)</sup>’의 어근 / 성하다<sup>1)</sup> (형) ①물건이 본디 모습대로 멀쩡하다. ②몸에 병이나 탈이 없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3445) / 성<sup>13</sup>(盛) ‘성하다<sup>3)</sup>’의 어근 / 성하다<sup>3)</sup> [I] (형) ①기운이나 세력이 왕성하다. ②나무나 풀이 싱싱하게 우거지다. [II] (동) ①세력이 한창 일어나다. ②벌레, 물고기 따위가 퍼져서 그 수가 부쩍 늘어나다. ③집안이나 자손이 기세 좋게 퍼져서 흥하다. / 성히<sup>2)</sup> (부) ①→성하다<sup>3)</sup>[I]①. ②→성하다<sup>3)</sup>[I]②(국립국어연구원, 1999:

4층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와 ‘어’ 한 글자가 다르니 천지가 달라졌다. 우리말의 묘미다. 그리고 그 “솔직한 말”에 공감(共感)한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당편이의 삶과 존재의 양식을 추적한 내용과 관련이 깊은 글이 있어 아래에 인용한다.

장님[盲]·절름발이[蹇躄]·손발 병신[廢疾·篤疾]·나환자 같은 자들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바이다. 또 육친<sup>六親</sup>이 없어서 일정한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무리들 ... / 그들 중에서 친척이 하나도 없어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자에게는, 그의 고향에서 덕망 있는 이를 골라 보호해주도록 하되, 잡역을 면제해주어 비용을 대신하게 해야 한다. (『목민심서』 제6 애민[愛民] 제5조 관질[寬疾]; 정약용[저]·민족문화추진위원회[편], 1998: 178)

조선 후기에도 오늘날 장애인에 갈음하는 사람들을 천시하고 싫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달리, 혼자서 먹고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위 소설의 당편이)이 떠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고을의 수령이 개입하여 그들을 보호해 줄만한 인품을 지닌 사람(위 소설의 “녹동 덕”)을 찾아 맡기고, 그 보호자가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잡역의 면제로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시하고 싫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 이와 함께, 그들을 대하는 방법과 요령도 교육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의 저술인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사소절(士小節)』 『동규(童規)』 제8 동지(動止)에 이와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사내 아이들은 입이 가볍다. 모름지기 경계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를테면 걸인을 대할 때 비렁뱅이라 부르지 말고, 애꾸눈을 대할 때 외눈배기라 부르지 말며, 또한 참혹하고 해괴하고 원통한 말을 가볍이 입박에 내지 말아야 한다. 소경은 흔히 성질이 사나우니 길에서 만날 때 조소하거나 희롱해서는 안된다. 그러다가는 얻어맞거나 욕을 먹게 될 것이니 매우 경계해야 한다. 나는 길에서 소경을 만날 때면 서로 부딪힐까 싫어서 반드시 기침을 하고 지나간다. 대범 불구자들은 곧잘 성을 내니 모두 잘 대우하는 것이 옳다. (『청장관전서』 권 16 『아정유고(雅亭遺稿)』 8; 대한 특수교육학회, 1995: 65-66 재인용)

『소학(小學)』을 통한 가르침과 별도로, 소경·불구자들을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처신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아이들의 언행을 일러주고 있으니 오늘날과 참 많이 다르다. 이처럼 전통시대를 산 사람들은 오늘날의 장애인과 참 다른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역병의 경우는 앞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26년(1442년)에 국왕은 한성부에 전지를 내려 기민을 한 곳에 많이 수용하여 시식(施食)케 하면 질병이 발생 전염하여 사망하는 일이 많을 것이니 동서 활인원과 각 진제장에 나누어 극진히 진휼하고, 혹 병든 사람이 있으면 타인에게 접근치 않도록 한성부와 오부 관리가 분담하여 잘 감독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권 105, 세종 26년 3월 16일조; 대한특수교육학회, 1995: 63 재인용)

‘전염’의 가능성이 있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타인과 접하지 않도록 각각 해당 관청에 격리 수용하여 극진히 진휼·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과연 역사의 진보를 믿어야 하는가. 오늘날 장애인 통합교육론에서 장애인을 어디에, 누구랑 통합하자는 말인가.

### 3. 자립학 연구성과와 시비학적 논의의 방향

지금 여기에 쓰는 이 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위에서 한 논의를 그렇게 한 방향에 대한 설명과 뒤의 논의를 그렇게 하기 위한 방향의 설정이다. 앞의 글은 논리의 전개상 이 장의 앞머리에 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곳에 둔다.

조동일 교수(1997: 31)는 ‘자립학’을 ‘우리 학문으로 남의 학문 막아내기’라고 정의하였다. 과거 사실(학문)로 남의 학문 막아내기를 자립학의 제1방향이라 하고, 민족주의론(학문)으로 남의 학문 막아내기를 자립학의 제2방향이라 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논의를 자립학 제2방향에서 하나갈 능력도, 그럴 생각도 내게 없다. 이 글은 자립학 제1방향에서 일부 펼쳐본 학문담론이다. 그 단초는 학술논문이나 저술이 아니고, 대설(大說)도 아닌 소설(小說)에서 왔다. 이문열(2000)의 자전적 소설 『아가(雅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그것이다. 학문 종사자가 하지 못한, 할 수 없는 지적 통찰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실마리는 정창권 교수(2005)의 저서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에서 왔다. 이로부터 시작해서, 최근 개통된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주로 논의했다. 검색 결과로 찾은 내용과 정량적 분석을 함께 했다. 또 다른 일부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사이트 검색에서 왔다. 이들 국학 연구성과는 나의 능력 탓에 깊이 다루지 못한 채 끝을 맺었다. 뒤의 시비학적 담론을 전개하는 발판 정도로 삼고, 이 글에 후속되어야 하는 또 다른 연구의 기틀로 삼는다.

다음의 시비학적 논의를 위해 그 방향을 설정한다. 오늘날 ‘장애’란 말이 사용되게 된 근원을 주로 국가공식기록으로서 법률문서에서 찾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함께, ‘현행’ 법률의 ‘연혁’ 법률을 찾아 그 내용을 따져보고 더 과거로 가서 ‘근대’ 법률문서를 찾고 그 내용도 따져본다. 내가 발표한 논문, 그 논문을 쓰면서 찾아보았던 것과 함께,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찾아보았다. 이를 통해 근대법령부터 현행법령까지 법정용어의 변천을 구분하여 논의한다. ‘시비학’ 제1방향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했다. 나의 능력 탓에 제2방향(과제3방향)으로 확대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 논의의 제한점이다. 능력 있는 후학이 맡아 할 일로 남겨둔다.

#### IV. 근현대시대의 장애개념체계에 대한 자립학적 논의

##### 1. 근대 법령의 장애(인) 명칭 또는 용어

위에서 인용하여 검토한 호칭들, 즉 잔질·폐질·독질은 대개 진제(賑濟)·구휼(救恤)의 대상으로서 환과고독과 함께 불렀던 것들이다. 이는 곧 정부와 정부의 관리들(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이들에게 오늘날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일반 국민들(백성)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말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법령상의 용어로서 이 말들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그 말들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어떻게 변천을 거듭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장애’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를 느낀다.

유길준은 『서유견문(西遊見聞)』(제17편)에서 빈원(貧院), 노인원(老人院), 유아원(幼兒院), 고아원(孤兒院), 기아원(棄兒院), 병원(病院), 치아원(痴兒院), 광인원(狂人院), 맹인원(盲人院), 아인원(啞人院) 등을 언급하고 설명하고 있다. 역본도 여럿 있고(예: 허경진, 2004), 이들 처소 또는 학교를 언급한 국내 특수교육학 저술도 여럿 있기에(예: 대한특수교육학회, 1995),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글에서 찾으려는 답은 현재의 ‘장애’를 갈음하는 ‘표현’과 그 ‘뜻’이기에, 세부적인 사실을 여기서 재론(再論)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에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고, 스스로 품는 이 물음에 답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지만, 문제의 제기는 필요하다고 보아 여기에 밝혀둔다.

국역본은 원문 순서에 따라 빈민 수용소(양로원, 유아원, 고아원, 기아원 포함), 병원, 정신박약아 학교, 정신 병원, 맹아원, 농아원으로 번역되어 있고(예: 허경진, 2004), 특수교육학 저술에서는 치아원, 맹인원, 아인원, 유아원의 순서로 논의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원문은 빈원(貧院), 병원(病院), 치아원(痴兒院), 광인원(狂人院), 맹인원(盲人院), 아인원(啞人院)의 순서로 되어 있고, 노인원(老人院), 유아원(幼兒院), 고아원(孤兒院), 기아원(棄兒院)이 그 순서대로 빈원에 포함되어 있다. 원문에서 중요 부분만 가려내어 한자는 그대로 두고 한글로 된 것은 현대어로



바뀌 내가 다시 옮긴 역문은 다음과 같다.

빈원(貧院)은 빈곤무고(貧困無告)한 자를<sup>사람을</sup> 홀양(恤養)하는 처소(處所)니, 각  
 목으로 구분된다. 제일 노인원은 환과(鰥寡)의 궁노(窮老)가 의탁할 처(處)가 무  
(無)하면<sup>곳이 없으면</sup> 의복거처(衣服居處)를 비구(備具)하여<sup>구비(마련)하여</sup> 그 신(身)을 종  
(終)토록 구휼하는 처소라 ... 제이 유아원은 동치(童穉)의 신체가 불구(不具)하거나  
 근골(筋骨)이 허약(虛弱)하여 양생하는 방도가 무유(無有)한 자를<sup>있지 않은(없는) 사람을</sup>  
 구휼(救恤)하는 처소니 ... 제삼 고아원은 유치(幼穉)의 남녀가 부모와 친척의 무  
 양(撫養)할 자가 무(無)하다<sup>사람이 없으며</sup> 세전(世傳)하는 조업(祖業)도 부존(不存)하여  
<sup>있지 않아(없어)</sup> 빈핍무의(貧乏無依)한 자를<sup>사람을</sup> 구휼하는 처소니, ... 제사 기아원이니  
 기의(其意)는<sup>그 의미가</sup> 원명과 동(同)하여<sup>같아</sup> 기아를 구휼하는 처소라 ... 병원(病院)은  
 병인치료(病人治療)하기 위하여 설립한 자(者)로되<sup>(것이니)</sup> ... 치아원은 치아를 교훈  
 (敎訓)하는 학교니, ... 광인원은 광인(狂人)을 치료(治療)하는 처소니, ... 맹인원은  
 맹인(盲人)을 교회(敎誨)하는 학교니, ... 아인원은 아인을 교훈하는 처소니, ... 교도  
 원은 행실(行實)의 부정(不正)한 인민(人民)을 교회(敎誨)하는 처소니, ...

우선 내용을 정리한다. 첫째, 이들 원이 담당하는 사람들을 정리하면, 빈곤무고  
 한 사람(빈원), 궁노한 환과(양로원), 신체가 불구 또는 근골이 허약한 동치(유아  
 원), 무양(부양)할 사람 없는 유치(고아원), 기아(기아원), 병인(병원), 치아(치아원),  
 광인(광인원), 맹인(맹인원), 아인(아인원), 행실이 부정<sup>(바르지 못한)</sup> 인민(백성)이다.  
 둘째, 이들 원이 ‘하는 일’에 미묘한 차이가 보인다. ‘홀양’(빈원), ‘구휼’(노인원, 유  
 아원, 고아원, 기아원), ‘치료’(병원, 광인원), ‘교훈’(치아원, 아인원), ‘교회’(맹인원,  
 교도원)가 그것이다. 셋째, 이들 원의 ‘성격’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처소’(빈원,  
 노인원, 유아원, 고아원, 기아원, 광인원, 아인원, 교도원), “설립”된 ‘것’(병원), ‘학  
 교’(치아원, 맹인원)가 그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하면 <표 IV-1>과 같다.

<표 IV-1> 서유견문에 있는 기관·시설의 성격과 하는 일

기관·시설의 성격	하는 일(목적)				
	홀양	구휼	치료	교훈	교회
처소	빈원	노인원, 유아원, 고아원, 기아원	광인원	아인원	교도원
설립된 것	-	-	병원	-	-
학교	-	-	-	치아원, 맹인원	-

요사이 쓰는 말로 하면 구호와 자선이고, 치료는 치료고, 교훈은 교육이고, 교회는 교정이다. 처소는 시설(institution)이고 학교는 학교(school)다. 설립된 것은 병

원(hospital)만 들고 있으니 병원이다. 병원을 제외한 ‘원(院)’은 모두 institution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아인원을 처소라고 하고, 치아원과 맹인원을 학교라고 하는 등 일정한 패턴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내용과 함께 역문, 그리고 이들 기관이 인용된 특수교육학 저술 등에 대해 모두 함께 제기할 수 있는 물음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 번째로 드는 의문은 이들 기관·시설을 직접 본 것을 적은 것인지 아니면 전해들은 것을 적은 것인지의 여부다.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했고 다시 조선으로 귀국한 경로가 유럽과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여 돌아 왔기에, 직접 본 것을 적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필은 귀국 후 언급되어 있는 동안 이루어졌기에, 또 많은 자료들이 유실된 후였기에 영어로 된 것을 그대로 적기보다 나름의 방식으로 편집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래의 ‘환과고독’의 경우와 같이 구술을 담당하는 ‘빈원’과 그 아래의 각 원을 첫 머리에 둔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둘째, 역문의 문체와 이를 인용한 특수교육학 저술의 문체를 제기한다. 정신박약아(정신지체아) 학교, 시각장애아 학교, 청각장애아 학교 등과 같이 이들 ‘원’의 이름을 ‘현대식’으로 바꿔 번역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현대적 ‘해석’이다. 그런 해석이 담긴 역문을 『서유견문(西遊見聞)』이라 이름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있는 대로 적되 없는 것을 지어내지 않는다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의 학문하는 자세로 말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문대로 충실히 번역하고 주석을 붙이는 방식의 번역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체가 불구(不具)하거나 근골(筋骨)이 허약(虛弱)한 어린 아이[幼兒]만이 아니라, 광인과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도 현대어 ‘장애’(각각 지체장애[허약 포함], 정신장애, 정서·행동장애 등)에 포함되는 것이니, 이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도 저술에서 언급함이 마땅하다. “불구”<sup>5)</sup>란 말이 보인다. 이 말은 일제 강점기 법률에서 ‘폐질’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쓰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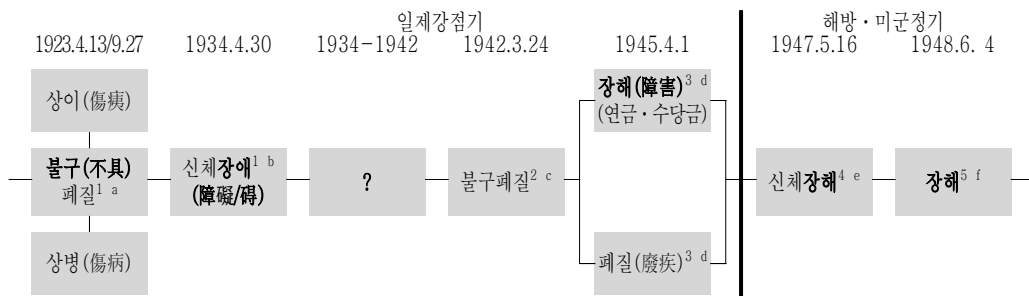
셋째, 맹인원, 아인원은 각각 맹‘인’(盲人)과 아‘인’(啞人)이란 말이 사용된 반면, 유아원과 치아원은 각각 유‘아’(幼兒)와 치‘아’(痴兒)란 말이 사용된 이유다. 내가 진실로 궁금한 것이다. 그 시설의 공식 이름을 옮긴 것인지, 아니면 이 책의 저자 유길준이 자기 나름으로 풀어쓴 것인지가 궁금증의 첫째요, 맹인과 아인은 ‘인(人=사람)’으로, 유아와 치아는 ‘아(兒=아이)’로 달리 쓰인 것이 궁금증의 둘째다. 이를 설명할 문헌을 찾을 수 없다. 헛된 망상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찾아볼 과업으로 남겨둔다.

이러한 학문연구를 실행에 옮겨 나름 소기의 성과를 내려면 문헌학적 전문성이

5) ‘불구(不具)’란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또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그런 상태 또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구자(不具者)’라 하고 어린 아이에게는 ‘불구아(不具兒)’라 하며 비슷한 말로 ‘장애인(障礙人)’이 있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2898). 흔히 쓰지 않는 말로는 ‘기인(畸人)’이 있다. 이 말은 ‘불구자’의 뜻과 성격이나 말,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른 ‘별난 사람[奇人]’의 뜻을 함께 갖고 있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907).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문헌이 과거의 것이라면, 우리의 과거 문헌이 대부분 ‘한자(漢字)’로 쓰여진 ‘특수성’을 감안하면, 단순히 ‘한자’를 많이 아는 수준으로 부족하다. 글자가 아닌 문장으로서 ‘한문(漢文)’을 해독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근자에 ‘한국고전번역원’ 같은 국가기관이 설립되어 많은 한문 서책들이 국역(國譯)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많은 문헌을 모두 촘촘히 살피는 것은 개인 연구자가 하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일이다. 일생을 바쳐야 할 일이다.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일단 범위를 좁혀 근대와 현대, 그것도 국가 차원의 법령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작업은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법령 내용이 내가 제기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 그걸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필요한 근거로 가장 견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밀히 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 기억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 수준의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그 조문 본문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자치법규(조례·규칙)까지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근대법령”이란 코너도 생겨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기의 법령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작업한 과정과 결과를 먼저 [그림 IV-1]에 제시하고 설명한 다음, 내가 내린 결론을 뒤에 그림으로 덧붙인다.



[그림 IV-1] 근대법령상 장애 개념·용어의 변천

비고: <sup>1</sup> 심신(心身)장애, 농(聾), 아(啞), 맹(盲)(이상, 불구), 기타 중대한 상해나 질병 또는 불치병(이상, 폐질) <sup>2</sup> 심신상실자, 농자, 아자, 맹자, 기타 중대한 상이, 불치병  
 출처: <sup>a</sup> 「은급법」(조선총독부법률 제48호)/「궁내성은급령」(조선총독부령 제16호) <sup>b</sup> 「조선소득세령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44호) <sup>c</sup> 「조선상속세령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55호) <sup>d</sup> 「조선선원보험법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72호) <sup>e</sup> 「미성년자노동보호법」(군정법령 제4호) <sup>f</sup> 「국방경비법」(군정법률 제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장애”란 단어를 키워드로 검색하니(2017.4.2), 근대법령의 본문에 ‘장애’란 말이 들어 있는 법령이 187건이나 있었다. 그 내용들은 예컨대 첫 검색결과로 「경찰범처벌규칙」(조선총독부법령 제40호, 1912.3.25 제정, 1912.4.1

시행)에 “사람이 음용하는 정수를 오예(汚穢)하거나 사용을 방해하거나 수로에 장애를 한 자”를 구류나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제1조 제60호)처럼, 사람의 행동(말하자면,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물길을 ‘막은’)을 지칭하는 말일뿐 사람(의 속성)에 대해 쓴 말이 아니기에 내가 하려는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래서 “장애자”로 다시 검색한 결과(2017.4.2), 「조선소득세령」 관련 12건과 「조선소득세령 시행규칙」 관련 42건으로 총 54건이 검색되었다. 이 중 1934년 4월 30일 전부개정된 「조선소득세령」(조선총독부제령 제6호, 시행일 1934.4.30)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통해 “18세 미만인 자, 60세 이상인 자 또는 신체장애자” 1인마다 소득세를 결정할 때 일정 금액 공제하도록 규정하였고(제1항), 이때 “신체장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도록 규정하였고(이 내용은 찾지 못했다), 1942년 3월 24일 전문개정(조선총독부제령 제11호, 시행일 1942.4.1)을 통해 ‘신체장애자’가 ‘불구폐질자’로 바뀌었다. 이에 “불구폐질”이란 말로 다시 검색한 결과(2017.4.2) 76건이 나왔다. 이들 법령에는 “불구폐질”과 함께 “상이”(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음)란 말도 사용되었으며, 조선총독에게 위임된 사항을 찾을 수 있었다. 1934년 4월 30일 전부개정된 「조선소득세령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44호, 시행일 1934.5.1) 제14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조선‘소득세’령 제17조제1항에서 불구폐질자라 함은 심신(心身)장애자, 농자, 아자, 맹자 기타 중대한 상해나 질병 또는 불치의 질환으로 항상 구완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또한 「조선상속세령」과 1940년 3월 31일 일부개정된 「조선상속세령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55호, 시행일 1940.4.1)은 불구폐질자의 범위(제4조의2)를 공제신청서의 제출절차(제4조의3)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제4조의2(1940.3.31 신설)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조선‘상속세’령 제5조의2의 불구폐질자라 함은 심신을 상실한 자, 농자, 아자, 맹자 기타 중대한 상이를 당했거나 불치의 질환에 걸려 항상 병구완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조선소득세령시행규칙」과 「조선상속세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구폐질자는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신장애자와 심신상실자, 상해·질병과 ‘상이’(전란·전쟁·폭동·의거·재해·질병 등으로 입은 상처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완과 병구완이 그것이다. ‘불구폐질’과 ‘상이(傷痍) 또는 상병(傷病)’이란 말이 함께 들어 있는 법령의 예로 1923년 4월 13일

제정된 「은급<sup>6)</sup>법」(조선총독부법률 제48호, 시행일 1923.10.1)과 1923년 9월 27일 제정된 「궁내성은급령」(조선총독부령 제16호, 시행일 1923.10.1)을 들 수 있다. 이 중 주목할 필요가 있는 조문은 「은급법」 제46조 제1항, 제49조 제2항과 「궁내성은급령」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2항이다.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에 앞의 것을 인용하고 앞의 것과 차이가 있는 뒤의 것을 괄호 속에 표기한다.

공무원(궁내직원)이 공무로 상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불구폐질로 실격원인 없이 퇴직한 때에는 보통은급 및 증가은급을 지급한다. (제46[31]조 제1항) / 전투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 및 공무상병으로 인한 불구폐질의 정도와 교육직원, 경찰감옥직원, 대우직원, 준문관, 준군인 및 준교육직원(항공경수 및 기타 판임대우직원)의 공무상병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대한 계등은 칙령으로(칙재를 거쳐 궁내대신이) 정한다. (제49[33]조 제2항)

한편 1944년 3월 1일 제정·시행된 「조선구호령」(조선총독부령 제12호) 제1조 제1항은 빈곤(가난) 때문에 생활이 불가능하여 ‘구호(救護)’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65세 이상의 노약자(제1호), 13세 이하의 유아(幼子)(제2호), 임산부(제3호) 외에 “불구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노무를 하기에 장애가 있는 자”로 정하면서, “임산부의 구호기간”과 “불구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된 “사유의 범위와 정도”는 “조선총독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2항). 이 제령의 시행규칙은 이 검색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기타”란 말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불구폐질·질병·상이”가 “정신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의 대표적인 경우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제국주의 일본 폐망하던 해 4월 1일 일부개정·시행된 「조선선원보험법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72호)에서는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에 관한 규정(제79조)을 통해 “불구폐질”(제3항 제4호, 제6호)과 함께 종전의 (심신 또는 신체·정신) “장애”란 말 대신에 “장해”(제2항 제3호, 제6호)란 말이 등장한다. 제3절(제67조~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2조, 제72의2, 제73조)은 제목이 “장해연금 및 장해수당금”(개정 1945.4.1)이다. 이들 조항 중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 “장해연금 또는 장해수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 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제1항) 중 “폐질의 원인인 질병 또는 부상의 상병명 및 발병 또는 부상 연월일과 치유 여부 및 치유된 때에는 그 연월일”(제2호)과 “폐질의 원인인 질병 또는 부상이 직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인가의 구별”(제4호), 그리고 이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제2항) 중 “폐질 상태의 정도 및 폐질 또는

6) 은급(恩給: pension)이란 일제 강점기 때 정부 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하고 퇴직한 사람에게 주던 연금(年金: annuity)을 말하는 것이며, 현재에도 교회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부상의 경과에 관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제1호)와 “폐질의 원인인 질병 또는 부상이 직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질병 또는 부상이 직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서류”(제2호)를 규정한 제68조가 바로 그것이다. “폐질의 원인인 질병 또는 부상”과 “폐질 상태의 정도와 폐질 또는 부상의 경과”란 조문 내용이 특히 그렇다. 이를 정리하면, ‘질병/부상→폐질→장해’라 할 수 있다.

이어 “장해”를 검색어로 삼아 검색한 결과 41건(2017.4.2)의 근대법령이 검색되었다. 그 중 의미 있는 것은 미군정 당국이 각각 1947년 5월 16일과 1948년 7월 5일 제정한 「미성년자노동보호법」(군정법령 제4호, 1947.6.15 시행)과 「국방경비법」(군정법률 제0[?]호, 1948.8.4 시행)이다. 「미성년자노동보호법」 제9조(고용계약의 종료 소멸 해제)에서는 (내항을 통해 고용계약 당사자가 해약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피고용자의 “질병 기타 신체장해”(제2호) 때문에 취업이 곤란한 경우를 들었다. 「국방경비법」 제86조(시효)는 “전시도망죄와 폭동 급 살인죄” 외의 범행을 저지른 범인에 대한 군법회의의 심판권 또는 처벌권의 시효기간(3년)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로 “어떠한 명백한 장해로 인하여 군사법률에 복종치 안하였던 기간”을 들었다. 이 모두 “장해”로 표기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앞의 법률검토 흐름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의 총독부에서 사용한 “장해”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법령상의 근거는 미군정 당국이 1947년 6월 12일 제정(?)한 「상속세세율개정」(군정법령 제137호, 1947.5.1 시행) 제2조(상속세령 개정)에서 종전의 「조선상속세령」(조선총독부제령 제19호, 1934.6)을 개정하면서 “불구폐질”을 그대로 둔 점 등에 있다.

미군정기의 관련 기록은 주한 미 제24군이 미 군사정부의 활동상황을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까지 매월 본국에 보고한 문서에 일례가 있다. 34권 중 교육부 문만 추출하여 역문을 붙인 영인본으로 편집 출간한 정태수 박사(1992: 61[역문], 62[원문])의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 하권(1945-1948)』에 담긴 현재의 국립서울맹학교와 국립서울농학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7)</sup>

국립맹·농학교 / 10. 국립맹·농학교에 사용된 새로운 수업방법이 그 기관의 수준을 정규 초등학교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 프로그램은 6년제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종전의 기초 학교교육 3년제 과정을 대체하는 과정이다. / 농아들을 위해 구화(口話)를 가르치기 위한 수업이 최초로 행해졌다. 수화(手話)는 저학년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 농아(聾兒)를

7) 이 월례보고서(月例報告書)는 명칭이 4번 변경되었는데, 제6호(1946.3)부터 제22호(1947.7)까지 총 17호가 담겼다. 이 글은 두 번째로 사용된 명칭으로 “한국에서 미국 군사정부가 한 활동의 요약문”(Summation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에 담겼으며, 1946년 6월 보고된 요약문 제9호 중 교육 관련 활동상황에 실린 것이다. 역문 중 일부는 내가 고쳤다.

위한 재봉(裁縫)과정이 개시되었다. / 음악 훈련이 맹아(盲兒)들에게 강조된다. 맹아와 농아들에게 자신감과 근육운동의 협응을 부여하기 위하여 고안된 체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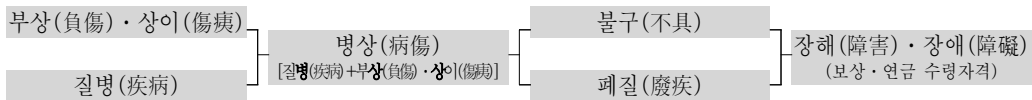
이와 관련된 최근의 기록이 있다. 서울맹학교 개교 100년(1913-2013)을 맞아 국립서울맹학교와 서울맹학교총동문회가 공동으로 펴낸 『서울맹학교100년사: 제1권』(2013: 117-119)이다. 이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여성 고문관 윌든 박사(Olive A. Whildin)가 파견되었고, 재무관 주영만이 통역자 역할을 했다. ② 파견된 때는 1947년 11월경이다. ③ 이때부터 국립맹아학교의 실권을 모두 쥔 윌든 박사는 맹인의 새 직업 개척(예: 담배공장 취업가능 여부 타진), 우리나라 맹교육에 적용을 시도한 미국식 교육제도의 도입(예: 연령 중심 또는 능력중심 무학년제 학급편성) 등 여러 방면으로 의욕적으로 노력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④ 국립맹아학교 관할이 보건후생성에서 문교부로 이관된 날(1948년 1월 10일) 이후 지급되지 않던 급식비의 지급이 재개되도록 했고, 그 결과 어려웠던 학교재정이 숨통을 틔웠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큰 인기를 받았다. ⑤ 1949년 5월에 물러났다.

이러한 윌든 박사의 활동은 미군정청을 통해 본국에도 보고되었다. 위의 ④의 배경이 되는 기록이 정태수 박사의 영인본 기록(1992: 290-293)에 남아 있기에 이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본다. 보통학교국(Bureau of Common Schools) 산하 특수아동과(Section on Exceptional Children)와 관련한 기록물로 요약문 제34호(1948.7-8)에 실린 것이다.

10. 장애[불리]아동 고문관인 올리브 윌든 박사와 가정경제과 고문관인 리디아 헤프론 여사가 교육부를 대표하여 IN의 국제아동긴급구호프로그램 대표인 마야슬 주노드 박사를 만날 목적으로 8월 19일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였다. 국제아동긴급구호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음식, 의복과 약품들을 공급하고, 남한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과 극동 지역에 배당된 물품 중에서 어느 정도의 물품이 남한에 할당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 11. 윌든 박사는 그 회의의 참석자(평위원)들에게 남한의 아동 중에서 맹아(盲兒) 15,000명과 농아(聾兒) 50,000명이 있고, 그 중 맹아 74명과 농아 284명만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이 아동들이 음식, 의복과 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한국 정부가 그것의 제공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으로 여타의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정태수, 1992: 290, 292)<sup>8)</sup>

8) 3번째 제목(South Korea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남한 과도 정부의 활동])의 요약문 최종 호(제34호, 1948년 8월)에 실린 것이며, 역문 중 일부는 내가 고쳤다.

맹학생과 농학생의 어려운 처지를 널리 알려 음식, 옷, 치료 등 구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이전의 전통시대부터 맹(盲)과 농아(聾啞)는 다른 잔질인과 다르게 이해되었고, 다른 대접을 받은 사실도 이어졌음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으로 제시하면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일제 식민지시대와 미군정시대의 장애개념체계도

제국주의 일본의 강점기와 미국 군정기의 여러 기록에 나오는 불구, 폐질, 장해, 장애는 위의 맹·농·아의 경우와 그 연원이 다를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역사적 기록을 통해 추론해본다. 전래의 삼질(三疾) 중에서 ‘폐질’만 남고 그 앞에 ‘불구(不具)’란 말이 붙어 ‘불구폐질’이 되었다. ‘불구’는 cripple 또는 disable의 역어라고 생각한다. 장해와 장애는 독일어 behindern(영어의 hinder: 방해 또는 방해하다)의 형용사 behinderten의 역어라고 생각한다. 지난날 다른 뜻으로 쓰던 ‘장애(障礙)’를 일본인이 behinderten의 역어로 고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애(礙)’의 속자(俗字)라 하는 ‘애(碍)’도 일본인이 그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자기네말로 쓰는 상용한자에 있는 ‘해(害)’로 바꿔 ‘장해(障害)’로 표현했을 것이다.

## 2. 현대 법령의 장애(인) 명칭 또는 용어

이 절에서는 “장애”란 말과 그 의미의 규정을 다룬 법령을 살핀다. 현재 시행 또는 시행예정에 있는 현행법령과 함께 해당 법령의 연혁법령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헌 헌법이 제정된 후 헌법에 “장애”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국가의 의무(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를 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1988.2.25 시행)이다. 국가의 의무를 그 대상별로 나누어 여성의 복지·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제3항), 노인·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정책 실시 의무(제4항), 재해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제6항)과 함께,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한 제34조의 규정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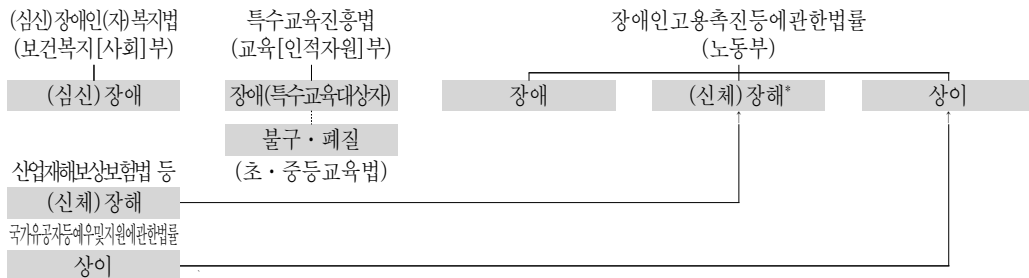
1949년 12월 31일 제정과 함께 시행된 「교육법」(법률 제86호)은 제98조의 규정을 통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33호, 1952.4.23 제정·시행) 제108



조에서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학령아동의 불구, 폐질, 병약, 발육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 (시행령)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특별시·시의 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구 교육감이 결정한다. 단, 시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구의 교육감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전항의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아동의 보호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면제는 불구폐질자에 한하며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차 이를 유예할 수 있다. (항의 구분을 위해 ①, ②, ③을 붙임)

장애 관련 국내법의 장애(와 또는 장애인) 관련 명칭과 세부 분류(등급)를 박옥희(2000: 19-22)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 저술에서 다룬 내용을 복지(일상생활·사회생활)·교육(학교생활)·노동(직업생활), 세 분야의 핵심 법률인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상을 ‘장애삼법[障碍三法]’이라 할 수 있다)부터 이들 법령에서 사용된 장애 관련 용어를 살펴본 결과를 도식화하여 먼저 제시하면 [그림 IV-3]과 같다. 그 내용과 그 밖의 법률에서 사용된 말들을 뒤에서 기술한다.



[그림 IV-3] 현대(연혁법령) 한국의 장애개념체계도

비고: \* 제정 법률(시행령)에서는 필요를 인정할 경우 유형과 등급을 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였고, 1999년 3월 3일 전문 개정을 통해 포함되었음.

「심신장애자복지법」(1981.6.5)의 적용 대상은 ‘심신장애자’이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으며, ‘심신장애’에는 지체부자유(팔·다리·몸통), 시각장애, 청각장애(청각·평형기능),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이 있고 등급은 1-6급이다. 「특수교육진흥법」

(1977.12.31, 1994.1.4)은 그 법률 적용 대상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자)라 칭하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으로 정의하였으며(1994), ‘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박약(정신지체[1994]),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1994]), 언어장애, 학습장애(1994), 건강(심장·신장·간)장애(2005), 기타 심신장애(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1994])를 말하며, 등급(판별/진단·평가-선정) 구분은 없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1.1.1)은 ‘장애인’을 법률 적용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다. ‘장애’에는 앞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신체장애’가 포함된다(시행령 제3조[1999.3.3 전문개정]).

법률 제명에 ‘장애’란 말이 있는 법률 외에 제명에는 없지만 조문 본문에 ‘장애’에 해당하는 말이 있는 법률에 대한 박옥희(2000: 19-22)의 검토(명칭, 종류, 등급) 내용은 손해의 보상·배상 관련 법률과 연금 관련 법률로 구분할 수 있고 총 아홉 개다. 「근로기준법」(1953.8.9)은 ‘장애’(제80조)·‘신체장애’(별표/제80조·시행령[2008.3.21])(개별적으로는 장애, 추상(醜相), 치과보철, 기형)로, 「국가배상법」(1967.4.3)은 ‘신체장애’(제3조/시행령[2006.12.29])(개별적으로는 장애, 추상, 치과보철, 기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제정,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7.1.13])은 ‘심신장애[신체상이]’(제27조, 제29조, 시행령 제7조, 제21조, 별표 1 등)·‘상이’(시행령 제7조, 별표 2)(개별적으로는 장애, 추상, 변형)로 명명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3.8.6)은 ‘장애’(제3조[1981.12.27], 별표, 시행령[제정] 제12조[장애=근로기준법 “신체장애”]), ‘신체장애’(시행령 제13조, 별표 1)(개별적으로는 장애, 추상, 치과보철)와 함께 ‘폐질’(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4[1983.8.6 신설])(개별적으로는 ‘장애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80.8.1)은 ‘신체장애(후유장애)’(시행령 제2조)(개별적으로는 장애, 추상, 변형)라고 지칭하고 있다. 「국민연금법」(1986.12.31)은 ‘장애’(제45조 외 다수)(개별적으로는 장애, 애경, 변형, 노동불능)로, 「공무원연금법」(1960.1.1)은 ‘폐질’(제13조), ‘장애’(제18조 외 다수), ‘폐질+장애’(제17조, 제19조)(개별적으로는 장애, 추상, 치과보철)로,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12.20)은 ‘폐질’(제1조, 제2조, 제33조) ‘장애’(제32조)(개별적으로는 장애, 추상, 치과보철, 기형)로, 「군인연금법」(1963.1.28)은 ‘심신의 장애’(제1조), ‘상이’연금(제6조, 제4절 등 다수), ‘폐질’(제20조, 제24조, 시행령 제5조, 별표 1)(개별적으로는 장애, 병, 질환, 증, 무력상태[빈혈·영양부족 등에 의한], 적출, 마비, 쇠약, 결핵)로 각기 다르게 명명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2007년 이래 많은 신법이 제정·개정·시행되고 있기에, 검토가 필요한 법령이 연혁법령에 비해 더 많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 결과

(2017.3.26), 법령 제명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법령만 15개에 이른다. 법률의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비슷하거나 동일한 것도 있고, 내용상 차이는 없지만 표현이 다른 것도 있어 정말 복잡하다. 이에 법령 제명에 “장애”란 말이 있는 법률에 국한하여 핵심 내용만 정리하여 <표 IV-2>에 제시하고 그 아래에 그 내용을 간략히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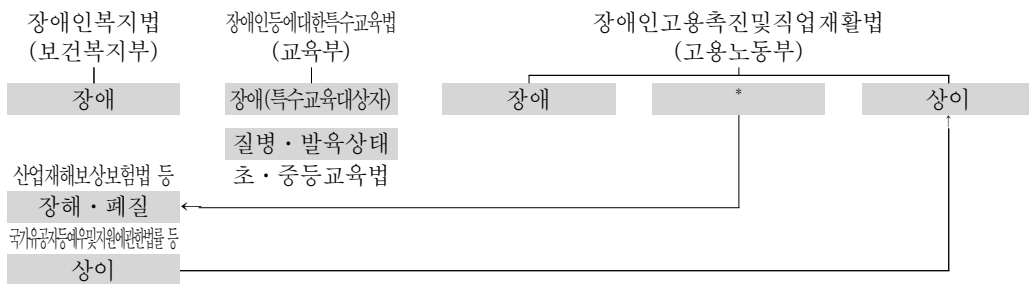
<표 IV-2> 한국 현행법령의 장애 관련 용어와 정의

제명(조항) <sup>1</sup>	용어	정의
장애교육법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다시 말하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교육적 성취(학습)/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장애	없음(교육적 성취[학습/학습기능/학업성취], 학교생활, 일상생활 적응[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
장애복지법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	①신체적 장애(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②정신적 장애(발달장애[←정신지체],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장애) <sup>2</sup> (※ 중복장애[시행규칙: 등급환산])
고용촉진법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	①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중증장애[시행규칙] 포함) 또는 ②국가유공자법의 상이
편의증진법	장애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차별금지법	장애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장애인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아동법	장애아동	①장애인복지법의 18세 미만 장애인. ②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6세 미만의 아동
발달장애법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의 미발달 또는 발달지연이 큰 사람
	장애	①지적장애, ②자폐성장애(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 ③통상적으로 발달하지 않거나 큰 발달지연(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건강의료법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주거약자법	장애인	①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②국가유공자법의 1-7급 상이 국가유공자, ③보훈보상대상자법의 1-7급 상이 보훈보상대상자, ④5·18민주유공자법의 1-14급 신체장해 부상자, ⑤고엽제법의 경도(輕度) 이상 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기업법	장애인	①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또는 ②국가유공자법의 상이 국가유공자
보조기법	장애인	①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법의 상이 국가유공자
장애연금법	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현저히 감소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
활동보조법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 제1조: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중증장애법	중증장애인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장애의 종류와 기준: ①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호흡기장애·언어장애, ②뇌병변장애·심장장애(1-3급), ③시각장애·지체장애·청각장애·신장장애·뇌전증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루장애·요루장애(1-2급), ④지체(손가락)장애(3급), ⑤3급 해당 장애의 중복(③의 경우)

산재보상법	장 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폐 질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써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비고: <sup>1</sup> 제명에 “장애”가 포함되어 있는 14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타법 규칙 1개 제외)과 “장애”가 조문 내용에 있는 대표적인 법률 1개(「산업재해보상보험법」)임. 제명은 모두 임의의 약칭임(5자). <sup>2</sup>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상 구분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심신장애”: 1981. 6.5 제정)에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1989.12.30 전문개정)으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및 정신질환)”(1999.2.8 전부개정)로, 다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발달장애 및 정신질환)”(2007.4.11 전부개정)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름.

참여정부 이래로 많은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중증장애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었고,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되어 발달장애가 법정용어로 정의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 IV-3]과 같이 ‘장애삼법’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면, [그림 IV-4]와 같다.



[그림 IV-4] 현대(현행법령) 한국의 장애개념체계도

비고: \* 1999년 3월 3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문 개정을 통해 포함된 ‘신체장애’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2004.6.5)에서 삭제되었음.

### 3. 시비학적 논의

사람은 하늘 아래 땅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오늘날 ‘장애인’이라고 총칭하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하늘 아래 땅 위의 공간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공간(空間)과 시간(時間)을 사차원이라 한다. 다석(多夕) 류영모는 우리말로 철학하기의 방향에서 이를 각각 “빔 사이”와 “때 사이”라 했다. 그리고 인간(人間)을 “사람 사이”라고 했다(이기창, 2004: 36-37).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빔 사이에서, 때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살아간다. 사람이 살아가는 차원은 오차원이다. ‘장애인’ 문제는 제5의 차원에서 일어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람 사이’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대하는 ‘태도’에서, 부르는 ‘호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인간사 모든 문제의 원천은 바로

‘사이’다. 이런 관점을 취하여, 앞에서 논의한 장애의 자립학적 연구성과와 함께 수입학적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IV-5]와 같다.

공간空間 범사이

		동				서			
		수입학(제2방향)	국학·자립학(제1방향)		수입학(제1방향)	양학·수입학(제1방향)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시간 時間 때 사이	전통	잔질 등(?)	잔질(殘疾)	독질(篤疾)	폐질(廢疾)	잔질 등(?)	handicapped (disabled?)	handicapped (disabled?)	behinderten (?)
	근대	잔질 등(?)	장애(障礙/碍)	장애(障害)	불구(不具) 폐질	잔질 등(?) 불구 등(?)	handicapped (disabled?)	handicapped (disabled?)	behinderten (?)
	현대	잔질(殘疾)	장애(障礙)	상이(傷痍)	장애(障害)	장애(障害)	with disability	disabled	behinderten

[그림 IV-5] 장애 명칭의 동·서간, 국학(자립학)·양학(수입학)간, 개별 국가(언어)간 비교  
비고: 시대 구분은 전통의 경우 정창권(2005), 근대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2017년 4월 2일 기준)에 따른 것이며, 현대는 지금 현재의 뜻으로 쓴 것이기에 자의적인 구분일 뿐 역사학의 엄밀한 시대 구분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님.

지금 여기(here and now) 한국에서 ‘유개념(용어)’으로서 ‘장애’의 ‘중개념(용어)’은 장애, 장애, 상이 등이다. 이들 개념(용어)은 모두 근대 이후에 ‘수입’된 말이다. 전통시대에 쓴 말로 ‘폐질(廢疾)’이 ‘장애(障礙)’에 가장 가깝고, ‘잔질(殘疾)’이 ‘상이(傷痍)’에 가장 가깝다(정약용, 『목민심서』 애민(愛民) 6조[제5조 관질(寬疾)] 참조). 이 말은 정책(법령)의 시행에서 보호·구휼받을 자격인으로 ‘지칭(指稱)’되었을 뿐, 호칭(呼稱)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앞의 이문열[2000] 참조). 현대 중국에서는 ‘잔질(殘疾)’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장애(障害)’라고 쓰고 있다. 우리들만이 장애, 장애, 상이 등으로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쓰는 ‘장애(障礙)’는 단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상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애(礙 또는 碍)’자가 모두 일본의 상용(당용)한자도, 인명한자도, 교육용 한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해(害)’가 있을 뿐이다.<sup>9)</sup> ‘장애(障害)’는 독일어 behinderten(영어의 hinder: 방해하다)을 일본에서 ‘장애(障害)’로 옮겼고, 그것이 이 땅에 수입된 결과라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오늘날 장애를 지칭할 때에는 ‘disability’ 또는 ‘disablement’를 사용하고, 장애인을

9) [\*障] ショウ(샤우)·소우(사우) さわる / 障泥 あおり / 障碍 しょうがい·しょうげ 障礙 しょうがい·しょうげ (3069) // [x碍] <礙> ガイ·ゲ さまたげる / 碍子 がいし // <礙>→ 애 [碍] (3056) // [\*害] <害> ガイ そこなう : / しょうがい [小害] shogai (명) 작은 손해[재해(災害)], ↔ 大害だいがい / しょうがい [傷害] shogai (명) 상해. (용례) -罪 上해죄 ... / \* しょうがい [障害] (障碍·障礙) shogai (명) 장애; 장애. ①방해; 방해물. (용례) 胃腸-を起こす 위장 장애를 일으키다. ②‘障害競走’의 준말. [주의]본디는 ‘障碍.’ ... (안전길실(安田吉實)·손낙범(孫洛範), 1988: 3069, 3056, 1198). [\*]는 상용한자(교육용 포함)를, [x]는 상용한자가 아닌(따라서 인명용, 교육용도 아님)을 <>는 옛 글자 모형을 각각 나타낸다.

지칭할 때에는 ‘disabled person’(영국) 또는 ‘person with disability’(미국 등: 이러한 표현방식을 ‘people-first language’라 한다)라 한다. ‘disabled’를 ‘differently abled’의 뜻으로 읽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전용호, 2000: 38).

앞의 장에서 검토한 결과 청산의 대상은 일제가 남긴 유산만이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손’으로, 스스로, 또는 의식 없이 가져온 일본의 흔적이 많고 큼을 알게 되었다. 또한 미군 군정부의 통치 아래에서는 그들이 소개하거나 또는 영어로 쓴 미국 학문을 우리가 우리글로 바꿔 소개한 것이 많음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말만이 아니라, 학문하는 자세와 태도,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들의 정신세계까지 그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위해, ‘장애’ 특히 ‘장애인’이란 우리말을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말로 바꿀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두고, 무엇을 닦고 고칠 것인지, 장애학 또는 특수교육학 종사자 공동체는 결정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장애개념체계의 창조학을 위한 제언

이 글에서 검토·논의한 것은 말의 역사다. 말의 표현의 역사다. 말의 뜻의 역사에 대한 연구다. “장애란 말은 언제부터 사용했는가?”라는 작고 소박한 물음에서 시작했다. 그 근원을 찾아가면서 물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 말을 이 땅에 살았던(살고 있는) 우리들이 사용했던 말일까?”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한 말이 우리말과 글로 옮겨진 결과는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근원적인 질문은 “장애란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이었다.

나는 이 글에서 도울(耇杙) 김용옥 전 고려대학교 교수의 화법을 차용했다. 내가 대학원 등에서 학술연구자로 훈련받는 동안, 학문(과학)하는 자세를 가치중립성에 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간접 화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배워 익혔다. 나와 동시대를 사는 다른 연구자들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나는 “본 연구에서는”이 아니라 “나는”으로 글을 시작하여 글 쓰는 자의 주체를 드러내는 ‘새로운’ 실험적인 시도를 했다. ‘새롭다’함은 양학(구체적으로 제1방향의 수입학)이 한국특수교육학 담론을 과도하게 지배(거의 독점)하고 있는 탓에, 이 글과 같은 방식으로 쓴 논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 탓에, 나의 이러한 진술방식이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될지 걱정이 없지 않다. 다른 편에서 특수교육학의 학문담론에서도 글쓰기 방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다.

이 글은 특수교육학, 장애인복지학, 또 최근 급부상하는 장애학 연구에서 기초 중의 기초여서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문제를 다루었다. 머리속에 머물러 있던 생각을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려고 마음먹고 글로 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딴 소리’도 감히 말하는[敢言異說] 전 명지대학교 김정운 교수의 용기를 본받은 결과다. 내가 사숙(私淑)하는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의 차고금술(借古今述), 세설신어(世說新語)의 글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제1방향의 자립학(국학)적 논의가 미약하나마 일부 가능했음을 밝힌다.

내게 희미하게 비치던 문제를 이문열(2000)에서 구체적으로 의식하게 됐고, 정창권(2005)에서 실마리를 얻어 그 문제의 해결을 향해 한걸음 진전할 수 있었다. 특별히 정창권(2005)의 자립학적 연구 성과는 장애담론에 대한 탁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나는 그가 작업한 오늘날 장애담론과의 비교 논의에 허술함과 어긋남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회과학으로서 (특수)교육학을 공부한 내가 장애담론을 자립학(국학)의 입장에서 펼치는 것이 불가(不可)함과 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겪는 곤란(困難)함과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장애학 또는 특수교육학이 국어국문학이나 국사학 등과 학제(學際)적 연구를 시급히 펼쳐나가야 하는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의문에 대한 나름의 추론을 거쳐 ‘가설(假說)’을 세웠다. 그 가설을 확인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시대에는 오늘날의 뜻으로 장애란 말이 사용된 적이 없다. ‘잔질·폐질·독질’이란 말이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 말의 의미도 오늘날 말하는 질병과 장애를 포괄하는 말이었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등급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다. ‘잔질’이란 말이 가장 자주 사용되었고, 현재 중국에서도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전통시대에는 장애란 말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애(礙)’자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오늘날의 의미에 가까운 말에는 ‘애장(礙障)’이란 말이 있었다. 앞의 경우 그 의미가 오늘날과 달리 ‘지장’이나 ‘방해’였고, 뒤의 경우 사람 마음속의 ‘무엇’의 뜻이었다. ‘애(礙)’의 속자(俗字)로 알고 있는 ‘애(碍)’자는 사용된 예가 없다.

셋째, 전통시대에 쓰였던 잔질·폐질·독질이 근대에 와서 ‘불구·폐질’로, 다시(신체)장애 등으로 사용되었고 현대에 와서 ‘장애’로 정리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폐질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넷째, 전통시대에 ‘장해’란 말은 사용되지 않았다. 근대에 와서 피해보상보험, 세금 공제 또는 연금수령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일본인들이 지금의 뜻으로 만든 말이다. 현재 일본은 상용한자(특히 교육용) 지정을 통해 장해란 말만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장애’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나 지칭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장애인의 장애는 장애하다(타동사) 또는 장애되다(자동사)의 뜻에서 ‘가로막는 것’의 뜻(명사)

또는 ‘가로막힌 상태’의 뜻(의미상 형용사)이다. 장애인은 가로막는 것이 있는 사람, 즉 가로막힌 사람의 뜻이다.

요컨대, 오늘날의 ‘장애’와 ‘장해’는 전통시대에 ‘잔질·폐질·독질’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 일제 강점기에 ‘잔질·독질’은 없어지고 ‘폐질’ 단독으로 또는 ‘불구’와 함께 사용되었다. ‘불구(不具)’는 영어의 ‘cripple’(disability에도 이런 뜻이 있음) 등의 말을 일제가 자기네 말로 그리고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다 불구·폐질을 대신하여 ‘장애’ 또는 ‘장해’(이 역시 일제가 독일어를 번역한 말로 추론된다)가 새롭게 사용되었고, 미군정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전래의 ‘잔질’이, 일본은 역어 ‘장해’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장애·장해·폐질 등’이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란 말이 일제의 잔재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제의 잔재이기에 무조건 버려야 하는가. 무조건 버려야 한다면, 학문담론은 물론이요 일상의 언어생활도 해나가기 어렵다. 정신(精神), 사회(社會), 문화(文化) 등이 모두 서구 용어의 일본어 번역을 거친 말이기 때문이다. 대안은 있는가. 대안을 찾기 위한 학술연구의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미 우리말글속에 정착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그대로 둘 것인가. 일제가 남긴 단어 하나조차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청소하고 개조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말이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의 사용 경위가 그렇고,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의 부정적인 의미, 더 나아가 사람에게 이 말을 붙이면 의미의 왜곡(즉, 가로막는 사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내내 대안으로 제시할만한 우리말을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지금으로선 대안으로 제시할만한 말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장기적으로 국어학, 국문학, 국사학, 문헌학, 철학 연구자 그리고 장애인복지학, 장애학 연구자와의 학제적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으로서는, 대안적 용어 표현이 제시·합의될 때까지, 이 말의 유래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대한 학문연구의 시작이요 토대일 뿐이다.

날이 갈수록, 나의 공부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응용에서 기초로 옮겨간다. 문(文)·사(史)·철(哲)로 대표되는 대학의 ‘강단(講壇)’인문학은 그 토대마저 무너졌음에도 ‘강호(江湖)’인문학은 마치 회춘(回春)이라도 한 것처럼 인기 있는 사실에도 공감한다.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한다. 제국주의 일본이 이 땅에, 우리말에 남긴 잔재를 청산하고,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세우고, 구시대의 폐습을 대청소하여 나를 고쳐 만들고자 한다면, 버릴 건 버리고, 둘 것은 정리하고, 비로 쓸고 걸레로 먼지까지 닦아내야 한다. ‘장애(障礙)’와 ‘장해(障害)’란 말이 내다버릴 대형 쓰레기인지, 정리해 두고 쓸 만한 것인지, 닦아낼 먼지 찌꺼기인지, 우리 특수교육의 학문 공동체가 깊은 고민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수균·조홍중 (2003). **장애이해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2017.3.26, 4.2)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국립서울맹학교·서울맹학교총동문회 (2013). **서울맹학교100년사: 1913-2013** (제1권). 서울: 국립서울맹학교.
- 대한특수교육학회 (편). (1995). **한국특수교육백년사**. 서울: 특수교육.
- 명수지문(名數咫聞)v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jsg.aks.ac.kr) 소장본 검색(2017.4.18)
- 박옥희 (2000).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개정증보 제3판). 서울: 학문사.
- 신현순 (편역). (1985). **특수아동심리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안전길실(安田吉實)·손낙범(孫洛範) (1988). (공편). **옛센스 일한사전**. 서울: 민중서림.
- 영한대사전** (1998). 서울: 시사영어사.
- 유길준 (저). 허경진 (역). (2004). **서유견문**. 서울: 서해문집.
- 유길준 (저). **서유견문**.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소장본 검색(2017.4.22)
- 이기창 (2004). **이 땅에서 우리말로 철학하기**. 서울: 살림.
- 이문열 (2000). **아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서울: 문음사.
- 이유훈 (2002). **특수교육의 패러다임: 통합교육의 당위성과 학교개혁**. 서울: 교육과학사.
- 전용호 (2000).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문사.
- 정약용 (저).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 (1998). **목민심서 2**. 서울: 솔판사.
- 정창권 (2005).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울: 문학동네.
- 정태수 (편). (1992).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 (하: 1945-1948). 서울: 홍지원
- 조동일 (1997).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sillok.history.go.kr) 검색(2017.4.16)
- 漢韓大字典** (2003). (전면 개정·증보판). 서울: 민중서림.
- 한현민 (2000). **특수아동과 특수교육**. 서울: 특수교육.
- 한현민 (2001). 장애와 특수교육요구: 개념적 고찰.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1), 39-63.
- 한현민 (2003). “치료교육”의 해체와 특수교육의 재구성.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2(2), 23-55.
- 한현민 (2008). 한국 특수교육(학), 그 학문적 정체성 정립의 가능성 (주제발표 1의 토론 3). **한국 특수교육(학)의 정체성 논쟁** (제1회 창과 학술제 자료집, pp.37-45.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문제연구소, 경산, 경북.
- Bartel, N.R., & Guskin, S.L. (1980). A handicap as a social phenomenon. W.M. Cruickshank (Ed.), *Psychology of exceptional children and youth* (4th ed., pp.45-73).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신현순 (편역). (1985). **특수아동심리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Collins English Dictionary* (2009) (home edition) Glasgow, England: HarperCollins.
- Committee of Enquiry into the Education of Handicapped Children and Young People (1978). *Special educational needs*. London: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 Cruickshank, W.M. (Ed.). (1980). *Psychology of exceptional children and youth* (4th ed., pp.45-73).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Friedson, E. (1965). Disability as social deviance. In M.B. Sussan (Ed.), *Sociology and rehabilitation* (pp.71-99).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Meyerson, L. (1971). Somatopsychology of physical disability. In W.M. Cruickshank (Ed.), *Psychology of exceptional children and youth* (3rd ed., pp.1-74).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OECD/CERI (2004) *Equity in educati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learning Difficulties and disadvantages*. Paris, France: OECD.
- Shea, T.M. & Bauer, A.M. (1994). *Learners with disabilities: A social systems perspective of special education*. [안병환·조용태 (공역). (1999). **특수교육의 이해: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체제적 접근**. 서울: 양서원.]
- Shontz, F.C. (1980). Theories about the adjustment to having a disability. W.M. Cruickshank (Ed.), *Psychology of exceptional children and youth* (4th ed., pp.5-44).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신현순 (편역). (1985). **특수아동 심리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Skrtic, T.M. (1986). The crisis in special education knowledge: A perspective on perspective.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18(7), 1-16.
- Skrtic, T.M. (1991). *Behind special education*. Denver, CO: Love.
- Warnock, H.M. (1978). *Special educational needs: Report of the Committee of Enquiry into the Education of Handicapped Children and Young People*. London: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 Webster's Ni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1987). Merriam-Webster.
- WHO (198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 Geneva, Switzerland.
- WHO (1999).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and disabilities (ICIDH-2)*. Geneva, Switzerland.
- WHO (200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ies, and health (ICF)*. Geneva, Switzerland. [보건복지부 (2004).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 The Foundational Study of the Conceptual Systems of Disabilities in Korea: A Critical Review on Literatures

Han, Hyun-min

Daejin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termine the original meaning of JANGAE (meaning disorder,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 and etc. in Korean) and to investigate the origin of that word. In the study, related literatures were reviewed critically. The sources of JANJIL, PHEJIL, and DOKJIL used in pre-modern times in Korea and their meaning is reconsidered, respectively. In the legal documents (including laws and regulations) of modern times (referring to the colonial times by imperialised Japanese and U.S. Arm-governed times), the terms of BULGU, PHEJIL, JANGAE, and JANGHYE were found and their origin and courses of changes were examined. Also, the definitions of the terms used in classifications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hat is disorder,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 and the others, were examined and compared to those of academic literatures written in english. In addition, the social being and living statues of the peoples with disabilities in pre-modern times were compared to those of modern and recent times. The conclusions is two-fold: First, the term JANGAE (including JANGHYE) is the result of introduction of western (including Japanes) cultures to Korea. Second, as the results of the new term, the being and living statues of the peoples with disabilities were changed (i.e. separated from society and institutionalized). The study suggest that the alternatives of present terms should be presented and examined and that the extensive researches on the social inclusion of peoples with disabilities are required. The further studies of the present studies is in need, too.

**Key Words :** BULGU(불구 不具), disability, disorder, DOKJIL(독질 篤疾), handicap, impairment, inability,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 (ICIDH), JAGNHYE(장해 障害), JANGAE(장애 障礙/障碍), JANJIL(잔질 殘疾), PYEJIL(폐질 廢疾)

---

논문 접수: 2017. 06. 12 심사 시작: 2017. 06. 12 게재 확정: 2017. 07. 25